

학부모/보호자님께:

캘리포니아 교육법 조항 48980은 정규 수업의 첫 학기 혹은 쿼터 초에 각 교육구의 이사회는 교육법의 정해진 규정에 근거하여 학부모/보호자에게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미국법의 다른 규정들 역시도 학부모/보호자에 대한 통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법 조항 48982는 학부모/보호자에게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인지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합니다. 귀하께서 학기 초 학생들 편에 전달된 양식을 서명하고 반송하셨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께서 귀하의 권리에 대해서 통보받았다는 인정서이지만 그러나 그 서명이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허락이 주어졌거나 또는 철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미국법은 귀댁 자녀의 교육과 학교 등교에 영향을 주는 특수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정해진 어떤 통보를 요구합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풀러튼 교육구는 법률의 요구에 따라 통지문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TABLE OF CONTENTS

Student Discipline 학생훈육	Page 1
Student Records 학생기록	Page 3
Health and Safety 건강과 안전	Page 5
Attendance 출석	Page 6
Non-Discrimination 비인종차별	Page 7
Students with Disabilities 장애학생	Page 7
Miscellaneous 기타	Page 7
Attachment 1 - FERPA	Page 10
Attachment 2 - Pesticide/Herbicide 살충/제초제	Page 11
Attachment 3 - Transfer Policies 전학정책	Page 12
Attachment 4 - Excused Absences 예외 결석	Page 21
Attachment 5 - Pupil Attendance Calendar	Page 22
Attachment 6 - Sexual Harassment 성희롱	Page 23
Attachment 7 - Notice of Alternative Schools	Page 26
Attachment 8 - Uniform Complaint Proc.	Page 27
Attachment 9 - Administration of Meds	Page 29
Attachment 10 - Type 2 Diabetes Info	Page 30
Attachment 11 - Visitors/Outsiders Policy	Page 32
Attachment 12 - Transportation 수송	Page 34
Attachment 13 - Nutrition Services 영양서비스	Page 35

KEY TO LEGAL REFERENCES

<u>Abbreviation</u>	<u>Complete Title</u>
CCR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캘리포니아 법규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연방 법규
EC	Education Code 교육 법규
H&SC	Health & Safety Code 건강 및 안전 법규
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장애인 교육안
LC	Labor Code 노동 법규
NCLB	No Child Left Behind Act 낙제방지안
USC	United States Code 미국 법규
W&IC	Welfare & Institutions Code 복지 및 제도 법규

풀러튼 교육구의 임무는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혁신적이고, 질적 향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적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어, "위대한 학교들 - 성공적인 자녀들"은 민주사회 내에서 생산적인 시민으로서 모든 학생들이 탁월성을 성취하고, 서로간의 관계기술을 습득하고, 그리고 과학적인 전문기술을 개발할 것이라는 신념을 구현합니다.

STUDENT DISCIPLINE 학생 훈육

RULES PERTAINING TO STUDENT DISCIPLINE (EC §§35291, 48980) 학생훈육에 관계된 규정: 풀러튼 교육구 이사회는 이사회의 관할권 아래 학교들의 행정과 훈육을 위해 규정들을 제정했습니다. 이사회는 학생의 품행, 효율적인 교실 운영 그리고 학부모/보호자 참여와

지원에 대한 높은 기대가 훈육의 필요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Board Policy 5144). 따라서 각 학교는 법에 맞추어 훈육규정들을 개발시켰습니다. 학생훈육에 관계된 규정들은 각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DUTY CONCERNING CONDUCT OF STUDENTS (EC

§44807): 학생 품행에 관한 의무: 풀러튼 교육구는 학생 자신들이 접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건의하는데 도움을 주는 학과과정을 가르치도록 학교들에게 부가적인 책임을 부여한 법률조치에 기인하여 학교 등학교 길에서,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혹은 휴식시간 동안 학생들의 품행에 대해 학생들에게 책임을 지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법은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가치관, 자존감, 책임있는 태도로 의견들을 전진시키는 기술들을 가르치므로, 그리고 학생들이 내리는 결정의 성격과 오는 결과를 이해시키므로 학생품행에 관한 의무를 성취하도록 규정합니다.

학부모 역시 자녀들의 품행의 결과에 대해서 자녀들과 대화할 책임을 갖습니다. 캘리포니아 민법 조항 1714는 자녀들이 일으킨 소유물에 대한 파손이나 인명 손상을 야기시킨 의도적인 비행에 대해 학부모에게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민법 조항 1714.3은 미성년자의 화기 발포로 인해 야기된 인명 손상에 대해서 학부모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AUSE FOR SUSPENSION (EC §§48900, 48900.2,

2.15, 48900.3, 48900.4, 48900.7, & 48901): 정학의 근거: 학생은 교육감/대행 혹은 학생이 입학 등록된 학교의 교장이 세분화되어 규정된 어떤것에든 특정지어지는 행동을 그 학생이 범했다고 결정되지 않는 한 학교에서 정학 또는 제적되지 않을 것입니다:

- (a) (1) 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주기 위해 위협을 가하거나 시도하거나 또는 일으킨 경우
(2) 정당방위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과 물리적 행사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경우
- (b) 어떤 종류이든 화기, 칼, 폭약, 혹은 레이저 포인트를 포함한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유하거나, 판매하거나, 혹은 공급한 경우, 형사법 조항 417.27(b)에 의거하여
- (c) 알코올 음료, 처방약 Soma (쏘마), 혹은 어떤 종류의 마취제이든, 통제된 물질을 소유, 사용, 판매, 공급하거나, 혹은 취한 상태인 경우
- (d) 알코올음료, 혹은 어떤 종류의 마취제이든, 통제된 물질을 제공, 제작, 또는 판매를 위해 협상한 경우, 그리고 그 액체와 물질 또는 물건이 알코올 음료 혹은 마취제와 같은 통제 물질로 간주되는 것을 사람에게 판매, 전달, 또는 공급할 경우
- (e) 약탈 또는 강탈행위를 범했거나 시도한 경우
- (f) 전자 파일 및 데이터 베이스를 포함하는 개인 사유 재산 혹은 학교 재산에 대해 파손을 초래했거나 초래를 시도한 경우

- (g) 전자파일 및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학교재산 혹은 개인 사유재산을 절도하거나, 절도하려고 시도한 경우
- (h) 담배, 어떤 종류든지 담배가 포함되어있는 제품, 니코틴 제품, 담배와 시가에 국한되지 않는 소형시가, 유사한 담배, 무연담배, 향기를 맡는 담배, 씹는담배, 껍으로 된 담배, 혹은 담배와 유사한 잎을 소유하거나 사용한 경우
- (i) 불경한 행위와 무례한 행위에 연루되거나 외설적 행위를 범한 경우
- (j) 마약 관련 기구를 소유, 제공, 혹은 제작하거나, 판매하려고 시도한 경우
- (k) 학교활동을 훼방하거나 의도적으로 감독관, 교사, 행정가, 학교 공무원 혹은 자신들의 의무를 실행하는 다른 학교직원의 적법한 권위를 거부하는 행위
- (l) 고의적으로 도난당한 학교재산 또는 개인 사유 재산을 받은 행위, 전자파일 및 데이터베이스 포함
- (m) 모형 화기를 소유한 경우
- (n) 성폭력 내지 성폭행을 범했거나, 시도한 경우
- (o) 학생으로 하여금 증인이 되지 못하도록 그리고/혹은 증인이 된 학생에게 양갈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징계 과정에서 항변하는 증인 혹은 증인인 학생을 괴롭히거나,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 (p) 처방약 Soma (쏘마)를 불법으로 제공하거나, 판매를 위한 약속을 하거나, 판매를 위한 협상을 하거나, 혹은 판매한 경우
- (q) EC 32050 정의에 의거, 가담하거나, 가담을 시도하거나, 혹은 신고식 행위를 한 경우
- (r) 학생 혹은 학교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된, 남을 괴롭히는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그러나 제한되지는 않으나 교묘한 행위의 수단에 의해서 남을 괴롭히는 경우
- (s) 타인에게 신체적 부상의 고통을 가하거나, 상해를 주는 일에 보조, 그리고/혹은 충동할 경우

EC 48900.2, 212.5 – 성희롱 시도 (gr. 4-8)

EC 48900.3 – 증오폭력 행위를 유발하거나, 유발을 시도, 위협하거나, 혹은 가담하는 경우 (gr. 4-8)

EC 48900.4 – 학생(들) 혹은 교육구 직원(들)에 대한 괴롭힘, 위협, 또는 협박에 연루된 경우, 혹은 적대적 교육환경이나 위협을 조장하는 경우 (gr. 4-8)

EC 48900.7 – 테러 위협 조장

ATTENDANCE OF SUSPENDED CHILD'S PARENT/GUARDIAN (EC §48900.1, LC §230.7)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의 출석: 풀러튼 교육구 이사회는 교사들에게 교사에 의해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보호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업일수 동안 학생의 교실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 (BP 5144.1)을 채택했습니다. 어떤 고용주도 어떤 방법으로든 이 요구에 순응하기 위해 직장으로부터 시간을 내는 것 때문에 고용인을 해고시키거나 차별을 둘 수 없습니다.

DUTIES OF STUDENTS (EC §48908, 5 CCR §300)

학생의 의무: 모든 학생은 정기적으로 정시에 등교하여, 학교의 규정들을 순응하고, 권한을 지닌 자들과 담당교사의 모든 지시를 즉각 시행하고, 질서와 예의범절을 준수하고, 근실하게 공부하며, 권한을 지닌 자들과 담당교사에게 존경을 보이며, 학교급우들에게 친절하고 예의바르게 대하며, 그리고 불경스럽고 저속한 언어사용을 철저히 자제해야 합니다.

DRESS CODE (EC §§35183, 51101) 복장규정: 풀러튼

교육구 이사회는 적절한 복장과 차림새는 생산적인 학습 환경에 기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부지들은 학교 계획의 일환으로, 학교 캠퍼스에 보여지는 경우, 학생의 학습 습관이나 교실 또는 학교 환경에서 필요한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며 건강 및/또는 안전에 위험 내지 산만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 될 수 있는 의복을 금지하는 복장 규칙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대행자는 학생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의 학교 부지에 적합한 복장 및 차림새 기준을 결정하는 단독 재량을 갖습니다. 학교 부지 기준을 위반하는 모든 학생은 적절한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복장 규칙의 사본은 각 학교의 학교장 사무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STUDENT RECORDS 학생 기록

RIGHTS OF PARENTS/GUARDIANS (EC §49063, et sq.):

Types of Student Records 학생기록종류: 학생기록은 인명 정보라기 보다는 학생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과 직접 관련된 정보인데 그것은 풀러튼교육구에 의해 보존되며 필기, 프린트, 테이프, 필름, 마이크로 필름, 혹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의무수행을 맡은 풀러튼교육구 직원에 의해 보존되도록 요구됩니다. 학생기록은 학생의 건강기록을 포함합니다.

Responsible Officials 책임 담당관들: 자녀의 학교에 있는 학생증기록의 보존에 대한 책임은 학교장이 책임을 집니다. 풀러튼 교육구에 보존되는 학생기록들을 위해서는, **Administrative Services/행정부서**와 **Child Welfare and Attendance Office/아동복지출석관리 부서** 책임자들이 맡게 됩니다.

Location of Log/Record 업무일지/기록 장소: 법은 업무일지 또는 기록을 각 학생의 기록을 위해 보존하도록

요구하며 그것은 기록과 적법한 관심으로부터 정보를 요구하거나 정보를 받는 모든 사람들, 취급기관들, 혹은 단체들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에 보존되는 기록들을 위해 업무일지는 교장실에 두게 되며, 풀러튼 교육구 보존의 기록을 위한 업무일지는 행정부, 자녀 복지 출석관리 사무실 책임자에게 두게 됩니다.

School Officials and Employees/Legitimate Educational Interests 학교담당관과 직원/적법한 교육관련사항: 학생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학교 담당관들과 직원들은 적법한 교육관련사항을 가진 위치에 있습니다. 학교 담당관이란 행정관, 감독관, 검증된 직원 혹은 지원담당직원 (제한되지는 않지만 준교육가, 건강 혹은 의료진 그리고 법률실행직원을 포함), 학교위원회에서 일하는 직원, 풀러튼 교육구가 특별한 업무를 실행하기 위해 계약을 맺은 직원 혹은 회사 (변호사, 회계감사관, 의료고문, 교육자문, 혹은 치료 요법사), 학생들에게 필요한 업무를 제공하는 다른 공중기관들, 다른 공립학교들 혹은 고등학교 졸업으로 인도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제공되거나 풀러튼 교육구 학생이 등록할 의향이 있거나 등록하도록 지시되는 학교 체제들로 풀러튼 교육구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기록들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요구자의 적법한 교육 관련사항과 관련된 기록들을 위해서만 허락이 됩니다. 요청이 있을 시, 풀러튼 교육구는 승낙없이 교육적 기록들을 학생이 등록하기 원하는 학교의 담당관들에게 알려줍니다. 적법한 교육관심사는 캘리포니아 교육법 조항 49076과 풀러튼 교육구 이사회 정책 5152와 5152.1에 기술되고 있습니다.

Right of Access and Review/Expungement 기록 접수와

검토/삭제의 권리: 귀하께서는 자녀와 관련된다면 어떤 것이든 풀러튼 교육구에 보존되는 모든 기록들에 접촉할 절대적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귀하가 자녀 학교에 보관된 자료를 보기 원하시면, 교장실로 연락하시거나 혹은 검토하기 원하는 기록들을 확인하는 서면 요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풀러튼 교육구 사무실에 보관된 기록들을 보기 원하시면, 행정 책임자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학교장 혹은 교육구 사무실은 기록들에 접속하도록 요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업무일자를 갖습니다. 풀러튼 교육구 이사회에 의해서 제적이 일시 정지된 학생의 회복을 위한 과제가 만족스럽게 달성되면, 이사회는 제적 처리과정의 모두 혹은 어떤 것이든 기록들에 대한 삭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렌지 카운티 교육 위원회가 학생 퇴학에 대한 풀러튼 교육구 이사회의 결정을 교정하는 지시를 접한다면, 카운티 교육 위원회는 제적 조치와 관련하여 교육구의 기록들과 학생의 기록을 삭제하도록 풀러튼 교육구 이사회에 지시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제공 후에 귀하께서 서면으로 취소 동의서를 제출하면, 풀러튼 교육구는 자녀의 특수교육

및 서비스에 대한 어떤 참고사항이든지 삭제하기 위하여 자녀의 교육 기록을 수정할 것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Challenging the Content of Records 기록내용 이의제기: 귀하께서는 풀러튼 교육구의 교육감에게 자녀와 관련된 서면 기록안에 기술된 어떤 내용이든 정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서면 요구서를 제출하므로써 기록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것은 귀하께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틀린 것, (2) 근거가 없는 개인적 결론 혹은 추정, (3) 관찰자의 권한 밖의 결론 혹은 추정, (4) 관측 시간과 장소를 가진 지명된 사람의 개인적인 관측에 근거하지 않는 것, (5) 오판된 것, 혹은 (6) 학생의 다른 권리들 혹은 사생활의 침해에 있는 것입니다.

Copying Costs 복사비용: 풀러튼 교육구 규정 1340에 따라 교육감 또는 대행자가 중복의 직접 비용을 반영하는 사본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일반 서비스는 요청한 첫 8 페이지/사본은 무료입니다. 추가 페이지/사본은 페이지 당 \$ 0.20 (20센트)의 비율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Complaints 이의제기: 귀하께서는 United States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미국 가정교육권리와 사생활 법안을 따라야 하는 풀러튼 교육구에 의한 주장된 오류에 대해 미국 교육부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권리를 갖습니다. (20 USC §1232g)

Prospectus of School Curriculum 학과정에 대한 내용설명: 자녀의 학교 교과 과정은 최소 매년 일회씩 내용 설명서로 편집되는데 그것은 www.fsd.k12.ca.us. 풀러튼 교육구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풀러튼 교육구 링크에 접속하여, Educational Services, Curriculum 에 들어 가서서 책자의 학년별 사본을 클릭하십시오.

Statement or Response to Disciplinary Actions: 훈육조치에 대한 진술이나 반응: 자녀와 관련된 어떤 훈육조치에 대한 정보가 자녀의 기록 안에 포함될 때면 언제든지 귀하께서는 자녀 기록 안에 훈육조치에 대해 서면 진술 혹은 반응을 포함할 권리를 가집니다.

Destruction of Student Records: 학생기록 파기: 풀러튼 교육구 이사회는 학교들이 자료 집계되도록 캘리포니아의 규정에 의해 감독을 받고 있는 원본 또는 정확한 복사본의 필수적 영구 학생 기록 (1급-영구기록)을 무기한 유지하도록 요구 받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더 이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될 때까지 필수 임시 학생 기록 (2급-선택기록)의 규정된 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그리고 3급-처분기록으로 재분류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그런 후에 캘리포니아의 규정들 (5 CCR 432)에 의거하여 파기

처분 됩니다.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은 아동의 학생 기록은 파기되기 전, 풀러튼 교육구에서 자녀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 식별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했을 때 IDEA 에서 학부모 통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일단 학부모/보호자는 개인 식별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그 정보가 미래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혹은 감사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풀러튼 교육구에 의해 판단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기 이전에 학생 기록 사본 및/또는 접속에 대하여, 그리고 학생 기록 파기 요청을 위한 옵션을 가지게 됩니다. (34 CFR 300.624, 5 CCR 16026). 영구적 기록으로 분류되지 않는한, 다른 모든 학생들의 기록들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그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5년 후에 파기됩니다. (5 CCR 16027)

RELEASE OF DIRECTORY INFORMATION (EC §49073): 인명 정보 공개: "Directory Information" 인명 정보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 가운데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의미한다: 학생이름, 주소, 전화번호, 출생일자 와 장소, 공부의 전공분야, 공식적으로 승인된 활동과 운동에의 참여, 운동팀 멤버들의 체중과 신장, 출석날짜, 수여된 학위와 수상, 그리고 학생이 다닌 가장 최근의 이전 공립 혹은 사립학교. 그것은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학부모/보호자를 위해 연락정보 역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풀러튼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 담당관들, 혹은 단체들이 인명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PTSA/PTA, PTA Council, School Site Council, All the Arts for All the Kids Foundation, Fullerton Education Foundation, Fullerton Technology Foundation와 같은 단체들과 그리고 범죄수사를 돕기 위한 법률실행기관. 인명 정보는 계약가, 자문가, 자원봉사자, 혹은 풀러튼 교육구가 업무 혹은 기능을 하청한 개인이 개인적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사용과 재공개와 정보에 대한 사용과 보존을 위한 풀러튼 교육구의 요구조건을 순응한다면 그들에게 인명 정보가 알려질 수 있습니다. 계약가, 자문가, 자원봉사자, 그리고 다른 개인들과 단체들은 그러나 회사들에 제한되지 않는 연감을 발행하는, 그리고 드라마 제작에 귀 자녀의 역할, 우등생 명부, 표창 목록, 졸업프로그램, 그리고 운동활동 파일을 프린트하는 그러나 제한되지 않는 회사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어떤 정보도 고용주, 장래의 고용주, 그리고 뉴스 미디어의 대표자, 그러나 제한되지는 않으나, 신문사, 잡지, 그리고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단체들에는 공개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풀러튼 교육구에 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된다고 통보한다면, 귀댁 자녀에 관한 어떤 인명 정보도 공개되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자녀에 관한 인명 정보에 대한 접촉을 거절하신다면 자녀 학교의 교장에게로 서면 통지를 제출해주시가 바랍니다.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20 USC §1232g) 가정 교육의 권리와 사생활 법안: FERPA 안에 공포된 미국의 법은 자녀의 기록과 관련하여 학부모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HEALTH AND SAFETY 건강과 안전

HEALTH SCREENING AND EVALUATION SERVICES (H&SC §124085) 건강검사와 평가업무: 자녀가 일학년 입학한지 90일 이내에 학부모는 18개월 전 안에 자녀가 신체검사를 포함한, 적절한 건강검사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오렌지 카운티 공중보건국에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 증서를 대신하여 학부모께서는 귀하가 자녀를 위해 건강검사와 평가업무를 원하지 않거나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서명된 철회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철회증서가 귀하께서 그 업무를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가리킨다면 철회증서 안에 그 이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REFUSAL TO CONSENT TO PHYSICAL EXAMINATION (EC §§49451, 48980) 신체검사 동의에 대한 거절: 학부모께서는 귀하께서 자녀의 신체검사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하면서 자녀 학교의 학교장에게 매년 서면 진술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공인된 전염병이나 감염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믿을 만한 적절한 이유가 있을 때면 언제나, 자녀는 집으로 돌려보내지고 그리고 학교당국이 아무런 전염 혹은 감염질환이 없다고 판단하기까지는 학교로 돌아오도록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CONTINUED MEDICATION REGIMEN FOR NON-EPISODIC CONDITION (EC §49480) 비일시적 상태를 위한 지속적 약물 치료요법: 만약 자녀가 비일시적 상태를 위한 약물치료 식이요법을 계속하고 있다면, 학부모께서는 학교 상주간호원 혹은 다른 지정 검증된 학교직원에게 (1) 먹고 있는 약물, (2) 현재 복용량, 그리고 (3) 담당하고 있는 의사의 이름을 통보하도록 요구됩니다. 학부모의 동의로, 학교 상주간호원은 자녀의 담당의사와 의논하며 그리고 자녀의 신체적, 지적, 그리고 사회성 뿐만 아니라 부작용, 생략, 과잉투여의 가능한 행동적 증상과 징후에 대한 약의 가능한 영향을 학교 직원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지속적인 약물치료요법을 하고 있다면, 이 통지서 첨부 파일 Attachment 9 에 명기된 정보에 따른 올바른 양식서를 위해 학교사무실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ADMINISTRATION OF IMMUNIZING AGENTS (EC §§49403, 48980) 면역약품의 투여: 풀러튼 교육구 이사회는 학생에게 면역약품을 투여하기 위해서 내과 내지 외과 면허의사, 혹은 등록된 간호원, 또는 감독 의사와 외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게만 허가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께서는 자녀에게 면역약품을 투여하는 것을

서면으로 동의할 권리를 가집니다.

ADMINISTRATION OF PRESCRIBED MEDICATION (EC §§49423, 48980) 처방약품의 투약: 만약 자녀가 정규 학기 동안 처방된 약을 먹도록 요구된다면, 학부모께서는 학교 상주간호원 혹은 다른 지정된 학교 직원이 자녀를 도와주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도움을 원하신다면, 학부모께서는 약품의 이름, 방법, 양, 그리고 약을 먹어야 할 시간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의사와 외과의, 또는 의사 조교로부터 서면 진단서, 그리고 의사의 진단서에 진술된 문제들에 대해 풀러튼 교육구가 자녀에게 도움을 주도록 바라시는 의도를 알리는 학부모의 서면 진술서 두 가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풀러튼 교육구가 학부모와 자녀의 주치의로부터 법이 요구하는 양식으로 서면 진술서를 받는다면, 자녀 역시 처방전으로 받은 자동주입 에피네프린(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소지할 수 있고 자가 투약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 첨부문 Attachment 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OBACCO-FREE CAMPUS POLICY (H&SC §104420) 담배 없는 학내정책: 풀러튼 교육구 이사회는 담배 없는 학내정책을 채택하였고 실행합니다. Board Policy 3513.3 이사회 방침은 풀러튼 교육구가 소유하거나, 또는 대여한 빌딩에서, 풀러튼 교육구 재산, 그리고 풀러튼 교육구 차량 내에서 어느 때라도 담배제품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사회 방침 5131.62은 학생들이 학교가 후원하는 행사에서, 또는 풀러튼 교육구 직원의 감독하에 있는 동안, 학교 재산이나 학교 시간 동안에 학생들이 담배나 니코틴 제품을 소유, 씹는 행위, 또는 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MEDICAL AND HOSPITAL SERVICES NOT PROVIDED (EC §§49471, 48980) 제공되지 않는 의료와 병원 서비스: 풀러튼 교육구 이사회는 풀러튼 교육구 학생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입은 부상에 대해 의료 혹은 병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MEDICAL AND HOSPITAL SERVICES FOR STUDENTS (EC §§49472, 48980) 학생을 위한 의료와 병원 서비스: 풀러튼 교육구 이사회는 풀러튼 교육구 소유지에서 혹은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에 오고 가는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야기된 학생들의 부상에 대해 의료 혹은 병원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도록 사고 보험의 그룹, 총괄적인 혹은 개인 정책을 통해, 혹은 손해배상 보험의 정책을 통해, 비영리 회원 단체를 통해 의료 혹은 병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도 학부모/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그런 서비스를 받아들이도록 요구되지 않습니다.

INSTRUCTION FOR STUDENTS WITH TEMPORARY DISABILITIES (EC §§48206.3, 48980) 일시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 만약 자녀가 정규수업 학급이나 또는 대안 교육 프로그램 출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권할 수 없는 일시적인 장애를 겪고 있다면, 자녀는 그들의 거주지역으로 간주되는 교육구에 의해 제공되는 개별적인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개별적인 교육은 주법에 의해 규정된 다른 상황들 아래 있을 때 가정에서, 병원에서 혹은 주립 병원들은 배제되지만 다른 거주해야 하는 건강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을 포함합니다.

STUDENTS WITH TEMPORARY DISABILITIES (EC §§48207, 48980): 일시적 장애 학생들: 자녀가 일시적 장애를 갖고 있고 그리고 병원이나 풀러튼 교육구 밖에 위치한 다른 거주지역 건강시설에 들어가 있을 경우, 병원이 위치한 지역의 교육구 거주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부모는 자녀가 자격을 갖춘 병원에 있기 위해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그 지역 교육구에 통보하는 책임을 갖습니다.

TYPE 2 DIABETES (EC §49452.7) 2형 당뇨병: 7학년 학생의 부모에게 제공해야 하는 제 2형 당뇨병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Attachment 10 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ROOF OF ORAL HEALTH ASSESSMENT (EC §49452.8) 구강 건강 검진 증명: 자녀가 킨더 유치부 또는 1학년을 입학하는 해의 5월 31일 이전 날짜로 된 구강 건강 검진서 (치과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가 시작되기 전 12개월 안에 받은 검진은 이 요구에 부합됩니다. 자녀의 치과 의사에게 학교에서 제공하는 구강 건강 검진서-**Oral Health Assessment Form** 을 작성해 주도록 문의하십시오. 구강 검진 양식서 제 3항 적절한 사유 확인란에 표시하여 치과 진단 요건 준수에서 예외될 수 있습니다.

FREE AND REDUCED-PRICE MEALS (EC §§49510, et seq., 48980) 무료 및 할인 급식: 매년 가정수입에 따라서 자녀에게 무료 혹은 할인 가격 급식에 대한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풀러튼 교육구 웹사이트 www.fsd.k12.ca.us 를 이용할 수 있으며 District Department 아래 Nutrition Services를 클릭하시거나, 혹은 Nutrition Services Department (영양서비스부서), 714-447-7435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NOTIFICATION OF PESTICIDE USE (EC §§17612, 48980.3) 살충제 사용에 대한 통보: 다가오는 년도 동안 학교에서 살포될 것으로 기대되는 모든 살충제 제품의 목록을 위해서는 첨부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SBESTOS MANAGEMENT PLAN (40 CFR §763.93): 석면 관리 계획: 각 학교에 대한 풀러튼 교육구의 업데이트된 석면 관리 계획서가 검토를 위해 풀러튼 교육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ATTENDANCE 출석

STATUTORY ATTENDANCE OPTIONS (EC §48980): 법정 출석에 관한 선택: 풀러튼 교육구는 각 학부모/보호자에게 풀러튼 교육구 안에 모든 현존하는 법정 출석 학교 선택과 근교지역 출석 학교 선택에 대해 권고하도록 요구됩니다. 이것은 학부모/보호자가 거주하는 지역내 정해진 학교보다 다른 학교 출석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지역내 전학, 타학군에서의 전학, 그리고 타카 필요 혹은 부모의 직장을 기반으로, 그리고 공개 입학법에 따라 입학한 지역에 근거된 전학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출석 선택의 완성본 요약은 위해서는 첨부 3 이사회 정책 5116.1 지역 내의 전학/공개입학, 5117 타학군에서의 전학, 5118 전학 교육구 선택 프로그램, 5118.1 학생 랩탑 선택 프로그램, 그리고 5118.2 등의 모든 출석 옵션의 전체 요약 참조.

EXCUSED ABSENCES (EC §§48205, 48980) 예외 결석: 자녀가 의료상의 또는 법률상 개인적인 사유로 결석할 때 학교로부터 결석 예외를 받습니다. 예외받은 기간 동안 학교를 결석하는 학생은 결석 기간 동안 하지 못한 모든 과제물과 시험을 완성하도록 허락될 것입니다.

GRADE REDUCTION/LOSS OF ACADEMIC CREDIT (EC §§48205, 48980): 학점감점/상실: 자녀는 어떤 결석이나 혹은 교육법 조항 48205에 준하여 받아들여진 결석하에 자녀에게 합리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놓친 시험과 과제물이 적절한 기간 내에 만족스럽게 완성되었을 때에는 학점을 감점되거나 상실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항 48205에 대한 완전한 자료를 보시려면 첨부 4를 참조.

ABSENCES FOR RELIGIOUS PURPOSES (EC §§46014, 48980) 종교적 목적을 위한 결석: 부모의 서면 동의서가 있다면, 자녀는 예배 장소에서 또는 다른 적절한 장소 또는 종교 그룹에 의해 지정된 학교 소유지로부터 떨어진 장소에서 종교적 관습에 참여하며 그리고 종교적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결석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업 중 한달에 4일 이상 결석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EXCUSE TO OBTAIN CONFIDENTIAL MEDICAL SERVICES (EC §46010.1) 비공개 의료서비스를 받는 예외조항: 7-8 학년의 학생들은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의 동의가 없이도 비공개 의료서비스를 받을 목적일 때 학교로부터 결석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SCHEDULE OF MINIMUM DAYS AND STUDENT-FREE STAFF DEVELOPMENT DAYS (EC §48980) 교직원 연수일과 단축수업일 일정표: 풀러튼 교육구는 모든 학부모/보호자에게 학생 결강 교직원 연수를 위한 날수와 단축수업일의 일정표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ttachment 5 풀러튼 교육구의 2011-2012 학생 출석 일정표 참조. 만약 어떤 단축수업일 혹은 학생결강 교직원 연수를 위한 날의 일정이 이 통보의

배부에 이어 정해진다면 풀러튼 교육구는 학부모에게 가능하면 일찍, 그러나 일정이 잡혀진 최소 혹은 학생 결강일 한달 이전에 통보할 것입니다.

NON-DISCRIMINATION 비인종 차별정책

STATEMENT OF NON-DISCRIMINATION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풀러튼 교육구는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혹은 장애 등을 근거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풀러튼 교육구는 영어 부족이 풀러튼 교육구의 입학과 프로그램 참여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풀러튼 교육구의 비인종차별 정책에 주장되는 이의제기들은 **Personnel Services** 인사업무부의 부교육감에게 (714-447-7450) 보내질 것입니다. 풀러튼 교육구 비인종차별 정책의 사본이 필요하면 풀러튼 교육구사무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SEXUAL HARASSMENT POLICY (EC §§231.5, 48980; 5 CCR §4917): 성추행 정책: 풀러튼 교육구의 서면 성추행 정책은 **Attachment 6** 이사회정책 5145.7 Sexual Harassment-성추행입니다.

STUDENTS WITH DISABILITIES 장애학생

SPECIAL EDUCATION (EC §56000, et seq., 20 USC §1401 et seq.) 특수교육: 캘리포니아 주법 및 미국법은 가장 제한적이지 않은 환경 안에서 자유롭고 적절한 공교육 (FAPE)이 장애를 가진 자격이 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자격, 절차상의 보호장치, 부가적인 문제들에 대한 정보는 풀러튼 교육구 학생지원업무부서 **Student Support Services Department**, 714-447-7500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CHILD FIND (EC §§56300, 56301): 풀러튼 교육구는 특수 교육과 관련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확인하고, 찾아내고, 그리고 접촉할 의무를 갖습니다. 만약 학부모께서 자녀가 특수교육과 관련된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학부모께서는 풀러튼 교육구 학생지원업무부서 **Student Support Services Department**, 714-447-7500에 연락하여 평가를 위한 문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MISCELLANEOUS 기타

DISSECTION OR OTHERWISE HARMING OR DESTROYING ANIMALS (EC §32255, et seq.) 해부 또는 동물을 해롭게 하거나 해를 가함: 만약 자녀가 동물을 해부하거나 또는 해를 가하거나 죽이는 것에 대해 윤리적 반대의사를 갖고 있다면, 자녀는 이 반대의사에 대해 교사에게 통보할 권리, 그리고 동물에 대한 해악적인 혹은 파괴적인 사용의 교육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반드시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입증된 메모에 의해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학년 초에 학부모께서 받은 양식들과 함께 애완동물과 교실 동물 해부참여 면제에 관한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CHOOL ACCOUNTABILITY REPORT CARD (EC §§35256, 32286): 학교업무 성적보고서: 풀러튼 교육구 이사회는 풀러튼 교육구 내의 각 학교를 위해 해마다 학교업무 성적보고서 (SARC)를 발행합니다. 자녀 학교의 보고서 사본은 요청 시 학교에서 제공될 것이며, 그리고 풀러튼 교육구 웹사이트 www.fsd.k12.ca.us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SARC는, 제한되지는 않으나, 캘리포니아 교육법 조항 33126에 명기된 학교 상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SARC는 중요 요소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자녀 학교의 안전계획 상태에 대한 매년 보고서도 포함합니다.

WAIVER OF ENGLISH LANGUAGE INSTRUCTION

(EC §310, 5 CCR §11309) 영어교육에 대한 철회: 캘리포니아 주법은 전반적으로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이 영어 가르침을 받아 영어를 교육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어교육 요구조건은 매년 제공되는 그 이전 정보를 담은 서면 동의서로 자녀의 부모/보호자에 의해 철회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를 담은 동의서는 학부모/ 보호자가 철회 신청을 위해서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모의 철회조건 아래, 이중언어교육 기술방법 혹은 법에 의해 허용된 전반적으로 인정된 교육 방법을 통하여 자녀들은 그들이 영어 가르침을 받는 클래스와 다른 과목들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HEALTH INSTRUCTION/CONFLICTS WITH RELIGIOUS TRAINING AND BELIEFS (EC §51240)

건강교육/종교적 수련과 신념 갈등: 만약 건강에 대한 학교 교육의 어떤 부분이라도 학부모의 종교적 수련과 신념과 상충한다면, 학부모께서는 자녀가 학부모가 가진 종교적 수련 및 신념과 상충하는 교육 부분으로부터 면제받는 서면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NOTICE OF ALTERNATIVE SCHOOLS (EC §58501)

대안학교에 대한 통지: 법은 풀러튼 교육구로 하여금 학부모/보호자에게 대안학교에 대한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교육법 조항 58501에 명기된 통지에 대한 사본을 위해 첨부 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ARTICIPATION IN CAREER COUNSELING AND COURSE SELECTION (EC §221.5)

커리어 상담과 과정 선정에의 참여: 학부모께서는 7학년을 위한 과정선정을 시작으로, 커리어 상담과 학과과정 선정에 관한 상담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UNIFORM COMPLAINT PROCEDURES (5 CCR

§4622) 획일적 이의제기 절차: 풀러튼 교육구는 불법적 인종차별에 관한 주장들을 포함, 교육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연방 혹은 주법 혹은 규정에 관한 진술된 위반사항에 대해 서류철하기, 조사 그리고 이의제기의 해결방안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채택했습니다. 어느 개인, 공공기관, 혹은 단체들이라도 주장된 혐의에

대한 서면 이의제기를 풀러튼 교육구 Personnel Services의 부교육감님께, 1401 W. Valencia Drive, Fullerton, CA 92833, 714-447-7450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정책 1312.3 Uniform Complaint Procedures 사본을 위해 Attachment 8을 참조하십시오.

NO CHILD LEFT BEHIND ACT (“NCLB”; 20 USC §6301, et seq.) 낙제아동방지법:

Limited English Proficient Children: 제한된 영어 능숙도 아동: 낙제아동방지법 (NCLB)은 교육구가 부모님들에게 또는 제한된 영어 능숙도를 지닌 아동의 부모들에게 언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참여하는 것에 대해 확인하고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 (1) 제한된 영어 능숙도 평가 이유와 언어교육 프로그램 배정에 대한 필요
- (2) 자녀의 영어 능숙도 수준, 그러한 수준이 어떻게 평가되었는가 그리고 자녀의 학업성취 상태
- (3) 자녀가 참여하는 또는 참여하게 될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교육의 방법들, 그리고 다른 이용가능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교육의 방법들
- (4) 자녀가 참여하고 있는 또는 참여하게 될 프로그램이 어떻게 자녀의 필요와 교육적 장점에 부응할 것인가
- (5) 그러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자녀가 영어를 배우는데 구체적인 도움을 줄 것이며 그리고 학년진급과 졸업을 위해 연령에 맞는 학문성취 기준에 부응할 것인가
- (6)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종결 요구조건
- (7) 장애를 지닌 자녀의 경우, 그러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자녀의 개별적인 교육 프로그램 (IEP)의 목표들에 부응할 것인가, 그리고
- (8) 학부모 요청시, 자녀를 그러한 프로그램으로부터 즉시 이동하는 권리를 설명하는 서면 안내서를 포함하는 학부모 권리에 속한, 그리고 학부모가 그러한 프로그램에 자녀의 등록을 거절해야하거나, 가능하다면, 다른 프로그램 혹은 교육의 방법을 선택해야하는 선택사항, 그리고 만약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하나 이상 풀러튼 교육구에 의해 제공된다면 교육방법과 여러가지 프로그램 가운데서 선택하기 위한 학부모 정보

만약 자녀가 제한된 영어능숙자 (LEP)이며 그리고 언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혹은 참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자녀에게 효율적인 위의 정보를 위해 풀러튼 교육구 Educational Services Department, 714-447-770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Program Improvement Schools 프로그램 개선 학교들: 낙제아동방지법 (NCLB)은 풀러튼 교육구가

학부모들과 학교개선이나 수정조치 확인된 학교에 등록된 학생의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1) 업무의 확인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설명, 그리고 풀러튼 교육구와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의해 협력이 제공되는 다른 학교들의 학업성취도에 비추어 학교가 어떻게 비교되는가:
- (2) 업무확인에 대한 이유
- (3) 학교개선을 위해 확인된 그 학교의 낮은 성취도의 문제점을 진술하는 것에 대한 설명
- (4) 교육구 혹은 캘리포니아 교육부가 학교로 하여금 성취도 문제점을 진술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대한 설명
- (5) 학교로 하여금 학교개선을 위해 확인되도록 만든 학문적 쟁점들을 진술하는데 학부모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
- (6) 자녀를 다른 공립학교에 전학시키려는 혹은 자녀를 위해 보충 교육 지원을 받는 학부모의 선택에 대한 설명

만약 자녀의 학교가 학교개선을 위해 확인되었다면, 이 정보는 학교장으로부터 얻으실 수 있습니다.

Right to Information Regarding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s of Teachers and Paraprofessionals:

교사와 전문 보조인의 전문적 자격에 관한 정보에의 권리: 낙제아동방지법 (NCLB)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자녀의 담당교사의 전문적 자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학부모에게 부여합니다.

- (1) 교사가 교육을 하는 주제 영역과 학년 수준을 위해 추가 정한 자격과 인가 기준에 부응했는가:
- (2) 교사가 위급 사태 아래 혹은 추가 정한 자격과 인가 기준을 면제받게 해줬던 잠정적 상태로 가르치는가
- (3) 교사의 학사학위 전공과 교사가 소유한 어떤 다른 졸업장 혹은 학위, 그리고 졸업장 혹은 학위의 교과 영역; 그리고
- (4) 자녀의 전문 보조인에 의해서 도움을 제공받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들의 자격은

이 정보는 풀러튼 교육구 인사부 Personnel Services Department 로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높은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사에 의해 4주 혹은 이상의 연속적인 주 동안 가르침을 받았거나 할당되었거나 하면 풀러튼 교육구는 적절한 때에 통지하게 될 것입니다.

Information on Child’s Level of Achievement 자녀의 성취수준에 관한 정보: 풀러튼 교육구는 주의 학업 평가

각각에 있어서 자녀의 성취수준에 대한 정보를 적절한 때에 제공할 것입니다.

Homeless Liaison 홈리스 연락: 집이 없는 학생들은 캘리포니아와 미국 법을 따라 일정한 권리를 갖습니다. 이 권리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면, 집없는 자녀와 청소년을 위한 풀러튼 교육구 연락 사무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업무 관리관을 접촉하기 위한 전화는 714-447-7528입니다.

STUDENT INSURANCE (EC §49472) 학생 보험: 풀러튼 교육구는 학교활동 참가 중 입은 부상에 필요한 의료와 병원 서비스를 위해 학생 보험에 들도록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학교 혹은 학교가 후원하는 행사 혹은 교통으로 운송 도중 부상을 입은 의료와 병원 서비스는 부모 동의서의 수령시 제공됩니다. Myers-Stevens 자발적인 보험 정보는 학년 초에 수령된 양식 묶음과 함께 동봉됩니다.

SUGGESTED ROUTES TO SCHOOL 제안된 학교에의 노선: 학부모께서는 www.fsd.k12.ca.us 풀러튼 교육구 웹사이트를 통해 자녀의 학교 홈페이지에서 “제안된 학교에의 노선”을 접속할 수 있습니다.

NSF CHECK COLLECTION 부도수표 소급: 2007년 6월 12일로 효력을 가지며, 풀러튼 교육구는 간혹 “부도난” 수표로서 언급되는 불충분한 (NSF) 자금의 수표를

소급하기 위해 오하이오주의 eCollect의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위해서 풀러튼 교육구가 물게 된 비용은 없습니다. 풀러튼 교육구는 수표의 액면 만을 받습니다. 따라서 풀러튼 교육구는 이 서비스를 사용하므로 어떤 영리를 얻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비용은 부도 (NSF)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며 그리고 수표마다 25불의 요금 (캘리포니아 민사법 조항 1719와 연방준비 이사회 수표 21 법안) 오하이오 주의 eCollet를 통해 자동적으로 발행자의 구좌로 청구가 됩니다. 만일 수표가 소급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게 되면, 수표는 사후조치로 콜렉션 에이전시로 양도됩니다.

ADDITIONAL INFORMATION 부가적 정보: 부가적인 중요 정보를 위해서 다음의 첨부사항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ttachment 11 Visitors/Outsiders Board Policy
첨부 11 방문객/외부인 이사회 정책

Attachment 12 Transportation
첨부 12 수송

Attachment 13 Nutrition Services
첨부 13 영양 서비스

ATTACHMENT #1
Notification of Rights under FERPA

The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가정 교육 권리와 사생활 법안은 부모와 18세 (“적격 연령 학생”)에게 학생의 교육 기록과 관련하여 일정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권리들은:

(1) 학교가 접속을 위한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학생의 교육 기록을 점검하고 검토하는 권리.

부모 혹은 적격 연령 학생은 학교장에게 그들이 점검하기를 원하는 기록을 확인하는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 당국자는 접속을 위한 일정을 배정해주고 그리고 부모 혹은 적격 연령 학생에게 기록이 점검되는 시간과 장소를 통지하게 됩니다.

(2) 부모 혹은 적격 연령 학생이 부정확하거나, 오해, 또는 FERPA 아래 학생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위반 했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교육기록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는 권리.

부모와 적격 연령 학생은 그들이 믿기에 부정확한 기록을 수정하도록 학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학교장 (혹은 합법적 학교 당국자)에게 서신을 보내고 변경되기를 원하는 기록의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시키고 그리고 왜 그것이 변경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당국이 부모 혹은 적격 연령 학생에 의해 요구된 기록을 수정하지 않기를 결정한다면, 학교당국은 부모와 적격 연령 학생에게 그런 결정에 대해 통보해주고 그리고 수정 요구에 관한 청문회의 권리를 통지해주어야 합니다. 청문회 절차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는 청문회에 대한 권리를 통보받을 때, 부모와 적격 연령 학생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3) FERPA가 동의없이 공개 권한을 주는 범위까지를 제외하고는, 학생의 교육기록 안에 포함된 개인적으로 신분증명 가능한 정보에 공개를 동의하는 권리. 동의없이 공개를 허락하는 한가지 예외는, 합법적인 교육과 관련된 사안을 가진 학교 당국자에게 주어지는 공개입니다. 학교 당국자는 행정가, 감독관, 교사, 혹은 지원 직원 (건강 혹은 의료진과 법률 실행 단체 직원)에 의해 고용된 사람; 학교 위원회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학교가 특수한 업무 (변호사, 회계감사관, 의료 자문, 혹은 치료요법사)를 실행하기 위해 계약했던 사람; 혹은 회사, 규율과 불만 담당 위원회와 같은 공식 위원회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혹은 학생의 업무를 실행하는 다른 학교 당국자를 조력하는 부모 혹은 학생입니다.

학교 당국자는 만약 그가 그의 전문적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교육기록을 검토해야 할 경우, 당국자는 합법적인 교육과 관련된 사안을 갖게 됩니다. 요청 시에, 학교당국은 교육기록을 동의없이 학생이 추구하는 또는 입학하기 원하거나, 혹은 이미 입학한 다른 지역 교육구의 당국자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4) FERPA의 요구조건에 순응하기 위해 교육구에 의하여 주장된 불이행에 대해 미국 교육부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권리. FERPA를 관장하는 오피스 이름과 주소는: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8520

ATTACHMENT #2

Fullerton School District Pesticide/Herbicide Expected Use List for 2011-2012 School Year

2011-2012 학년도 풀러튼 교육구가 사용할 살충/제초제

의회법안 2260과 일치하여, 교육구들은 학교부지 관리에서 사용하려는 살충/제초제의 유형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통보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만약 살충/제초제가 사용될 때 통지를 받기 원하신다면 자녀의 학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풀러튼 교육구의 관리 및 운영부에 의해 제시된 목록입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M&O 714-447-744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Product 제품	Active Ingredient 실제성분	Manufacturer 제조사	Usage 사용
Altosid	Methoprene	Wellmark	Mosquitoes
Borid	Boric Acid	Waterbury Co.	Insects
Advion Roach Gel Bait	Indoxacarb	DuPont	Roaches
Avert Cockroach Gel Bait	Abamectin B1	Whitmire Micro-gen	Roaches
ContraC Blox	Bromadiolone	Bell Labs	Rodents
Delta Dust	Deltamethrin	Bayer Corp.	Insects
EcoExempt	Rosemary	EcoSMART	Insects
Extinguish Plus	Methoprene	Wellmark	Red Import Fire Ant
Fumitoxin	Aluminum Phosphide	Pestcon Systems	Burrowing Rodents
Fusilade	Fluazifop-P-butyl	Syngenta	Selective Grasses
GreenMatch	Lemongrass Oil	Marrone	Weeds
MaxForce Granular Fly Bait	Nicotinoid	Bayer Corp.	Fly Bait
Maxforce Roach Gel	Fipronil	Bayer	Roaches
Nyguard IGR	Pyriproxyfen	MGK	Insect IGR
Phantom	Chlorfenapyr	BASF	Insects
Precor	Methoprene	Zoecon	Insects IGR
Pyronyl	Pyrethrins	Prentiss	Insects
Quintox	Cholecalciferol	Bell Labs	Rodents
Ramik Green	Diaphacinone	Haco	Rodents
Ranger Pro Herbicide	Glyphosate	Monsanto	Weeds
Suspend SC	Deltamethrin	AgrEvo	Insects
Master line	Bifenthrin	FMC	Insects
Termidor SC	Fipronil	BASF	Insects
Vanquish Herbicide	Diglycolamine salt	Syngenta	Weeds
XT-2000	Cyclohexene	XT-2000, Inc	Termites
ZP Rodent Bait	Zinc Phosphide	Bell Labs	Rodents

ATTACHMENT #3

Fullerton School District Board Policy

Intradistrict Open Enrollment 학군내 공개 입학

BP 5116.1

Students

Board Adopted: April 25, 2006

Board Revised: February 12, 2008, December 14, 2010

풀러튼 교육구 이사회는 이웃 학교들의 개념을 승인합니다. 학교출석의 범위는 현존하는 시설의 사용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이 밀려들어오는 상황을 피하고, 지역 이웃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지리적 장애를 고려하며, 학교와 프로그램에 사회경제적 균형을 유지하고, 그리고 학교 등교 거리와 안전하고 적절한 도보 상황을 유지하는 이사회에 의해서 확립됩니다.

이사회는 교육구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관심사를 충족시키는 입학 옵션을 제공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또는 대행자는 교육구에 있는 학교들 중에 학생들의 선택 및 전학을 위한 절차를 법률에 따라 수립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일부 부모님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거주지역 지정된 학교 외에 다른 학교에 다니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 역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군 경계 지역안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보호자는 학군내의 자신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학군내에 있는 어느 학교든지 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ducation Code 35160.5)

교육감 또는 대행자는 매년 이 정책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Education Code b 35160.5, 48980)

출석 학교 지역 밖 외부 지역으로부터의 입학 신청자들에 대해, 교육감 또는 대행자는 학교의 정원 초과에서 언제든지 공개입학 기간 동안 받은 입학 신청자들 중 입학 대상을 고려하기 위한 무작위적이고, 공평한 선택 방법을 이용할 것입니다. (Education Code 35160.5)

균일하게 모든 지원자에 적용되어있는 기존의 입학 기준을 지닌 전문 학교 또는 프로그램들을 제외하고, 입학 결정은 학생의 학업이나 운동 능력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학업 성적은 자격, 또는 영재 및 재능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배정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ducation Code 35160.5)

현재 거주지역 출석 학교 내 또는 교육구 절차에 의해 결정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아무도 거주 지역 밖 외부 지역에서 전학은 다른 학생에 의해 배정되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Education Code 35160.5) 이러한 지침하에 학생들이 가능한 한 학년 내내 일관되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구의 의도입니다. 공개입학이 완료된 후 거주 지역 학교에 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그 거주지역 내의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원 초과로 인하여 거주지 인근의 학교에 배정 될 것입니다. 그 학생은 거주지역 지정 학교의 수용 능력에 따라 다음 학년도, 혹은 더 빠른 기간 내에 학생의 거주 지역 지정 학교에서 자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Terms and Conditions 약정과 조건

전학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는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교육구 정책, 절차, 그리고 규정 그리고 모든 학내 규칙을 따르도록 기대되어집니다. 교육구 내의 전학은 행정 규제의 규정 조건 위반 시에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Transportation 수송

Title I 프로그램 개선 학교로부터의 전학자들을 위한 20 USC 6316 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구가 거주 지역 밖의 출석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송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청에 따라, 교육감 또는 대행자는 수송 자리와 자금의 가능성에 의거하여 수송 분담의 권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gal References: 법률 참조

EDUCATION CODE

35160.5 District policies; rules and regulations

35291 Rules

35351 Assignment of students to particular schools

48980 Notice at beginning of term

CODE OF REGULATIONS, TITLE 5

11992-11994 Definition of persistently dangerous schools

UNITED STATES CODE, TITLE 20

6316 Transfers from program improvement schools

7912 Transfers from persistently dangerous school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34

200.36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200.37 Notice of program improvement status, option to transfer

200.39 Program improvement, transfer option

200.42 Corrective action, transfer option

200.43 Restructuring, transfer option

200.44 Public school choice, program improvement schools

200.48 Transportation funding for public school choice

COURT DECISIONS

Crawford v. Huntington Beach Union High School District, (2002) 98 Cal.App.4th 1275

ATTORNEY GENERAL OPINIONS

85 Ops.Cal.Atty.Gen. 95 (2002)

Management Resources:

U.S. DEPARTMENT OF EDUCATION GUIDANCE

Unsafe School Choice Option, May 2004

Public School Choice, February 2004

WEB SITES

CSBA: <http://www.csba.org>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Unsafe School Choice Option:

<http://www.cde.ca.gov/ls/ss/se/usco.asp>

U.S. Department of Education, No Child Left Behind: <http://www.nclb.gov>

CSBA Revisions

(11/99 3/03) 11/08

Fullerton School District

Board Policy

Interdistrict Attendance 타학군 전학

BP 5117

Students

Board Adopted: May 10, 2005

Board Revised: December 14, 2010

이사 위원회는 프로그램과 학교의 학부모 선택권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학생과 교육구에 최선일 때 부모의 선택은 수용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한 교육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다른 교육구의 학교에 출석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선택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학 허락을 부여하거나 갱신하는 조건으로서, 부모님들과 타 학군에서의 전학 학생들은 이 정책의 조건들과 교육구 학교들의 규칙들을 따르도록 요구됩니다.

Interdistrict Attendance Permits 타학군 출석 허가

학생들의 학부모/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교육감 또는 대행자는 학생의 개별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각 사안에 따라 타 학군과의 타 학군 출석 허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타 학군 출석 허가는 수용 자리 상황에 따라 매년 검토될 것입니다.

교육감 또는 대행자는 교육구 내 학교들의 정원 초과 혹은 제한된 교육구 자원으로 인한 사정으로 타학군 출석 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Legal References: 법률 참조

EDUCATION CODE

41020 Annual district audits

46600-46611 Interdistrict attendance agreements

48204 Residency requirements for school attendance

48300-48316 Student attendance alternatives, school district of choice program

48915 Expulsion; particular circumstances

48915.1 Expelled individuals: enrollment in another district

48918 Rules governing expulsion procedures

48980 Notice at beginning of term

52317 Regional Occupational Center/Program, enrollment of students, interdistrict attendance

ATTORNEY GENERAL OPINIONS

87 Ops.Cal.Atty.Gen. 132 (2004)

84 Ops.Cal.Atty.Gen. 198 (2001)

COURT DECISIONS

Crawford v. Huntington Beach Union High School District, (2002) 98 Cal.App.4th 1275

Management Resources:

WEB SITES

CSBA: <http://www.csba.org>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http://www.cde.ca.gov>

CSBA Revisions

(7/04 11/07) 11/09

**ATTACHMENT #3
FULLERTON SCHOOL DISTRICT**

STUDENTS

Policy No.: 5118

Transfers

Board Adopted: May 24, 2005

District Choice Programs – Page 1

전학자 교육구 선정 프로그램

교육구 이사회는 독특한 접근방법, 기술, 전략 그리고 혹은 핵심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수한 학문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학내에 전문화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창안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전문화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District Choice Programs” (교육구 선정 프로그램)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전문화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효율적인 교육실체에 대한 현재 연구조사와 일치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교육구 선정 프로그램은 교육구가 채택한 핵심 교육과정을 가르치므로 학생들에게 주와 교육구의 기준과 기대치에 충족하는데 도움을 주는 전반적인 교육경험을 제공하도록 요구될 것입니다.

각 교육구 선정 프로그램은, 어떤 일정한 학교에 정해진다면, 거주지역의 학생분포를 갖지 않으며 그리고 풀러튼 교육구의 모든 거주지역 내의 학생들에게 이용될 수 있으며 그리고 만약 여분의 자리가 있다면, 교육구 상호간의 전학학생들에게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구 선정 프로그램은 인종, 종족, 성별, 종교, 혈통, 성적 성향, 장애조건, 직원 혹은 자원의 불공정한 배부, 프로그램에 불공평한 이용, 혹은 그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환경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어떤 다른 환경에 근거하여 차별정책 프로그램으로 종결되거나 인종적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 입학할 허락받기 위해서는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구 선정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입학 절차, 기준과 요구조건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고 어떤 교육구 선정 프로그램의 독특한 절차, 기준과 요구조건은 정당하게, 편견없이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모든 신청자들과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주의 법규와 규정에 명시된 것처럼 신청자들을 교육구 선정 프로그램에 승인할 때 학문적 성취도와 혹은 운동능력은 고려되어서는 안됩니다.

자격을 갖춘 학생들의 숫자가 교육구 선정 프로그램이 정한 정원을 초과할 경우, 교장/대행자는 입학지시와 혹은 대기자명단에의 배치를 결정하기 위해 이사회 정책과 규정 5116에 명기된대로 그 절차과정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구 상호간의 전학 학생들에 대한 교육구 정책과 규정은 어떤 교육구 선정 프로그램이든지 입학할 신청하는 그러한 학생들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교육구 선정 프로그램에 받아들여진 학생들은 교육구 정책과 규정 5116 혹은 5117에 명시된 기준과 절차를 따라 그 프로그램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교육구 선정 프로그램에 받아들여진 학생들은 교육구 정책과 규정에 명기된 대로 그 프로그램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는 한 학년 전체 동안 그 프로그램에 머물도록 기대될 수 있습니다.

교육감/대행자는 적용되는 법과 기준에 따라 해마다 각 교육구 선정 프로그램을 평가하며 그리고 교육구에 평가결과를 제시합니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만약 적법한 기간에 걸쳐 학생의 학문성취도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증명할 수 없을 경우 혹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결여되거나 그리고 직원 그리고/혹은 다른 교육구 자원들에 대한 배정을 정당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중단될 것입니다.

**ATTACHMENT #3
FULLERTON SCHOOL DISTRICT**

STUDENTS

Policy No.: 5118

**Transfers
District Choice Programs – Page 2**

Board Adopted: May 24, 2005

전학자 교육구 선정 프로그램

School Bus Transportation 학교버스 운행

교육구는 각 학교의 할당된 등교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부모가 지불한 버스 수송편리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의 거주지역은 지정된 도보거리를 넘어서 근처 학교까지입니다. 지정 지역 학교가 아닌 등교지역 밖에 학교를 출석하기로 선택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부모/보호자가 수송편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Misleading Information 잘못된 정보

프로그램 신청, 등록 서류, 거주지 증명서류, 혹은 입학과정의 일환으로서 보충된 다른 정보에 의도적으로 틀린 혹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리고 혹은 정보에 대한 계획적인 태만함은 즉각 전학이 취소되며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전학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Terms and Conditions 약정과 조건

교육구 선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부모와 학생은 적용되는 교육구 정책과 행정규정, 모든 학교 법과 프로그램의 약정과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불이행 시에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

Legal Reference:	Education Code	
법률 참조	35010	Control of district
	35020	Duties of employees fixed by governing board
	35160	Authority of governing board
	35160.5(b)(1)	Conditions for receipt of apportionments and inflation adjustments: adoption of rules and regulation relating to specific policies
	35291.5	Rules and procedures on school discipline
	46600-46618	Interdistrict Attendance Computation
	48204	Residency requirements for school attendance

**ATTACHMENT #3
FULLERTON SCHOOL DISTRICT**

STUDENTS

Policy No.: 5118.1

Students Laptop Choice Education Program – Page 1

Board Adopted: December 12, 2006

학생 랩탑 선정 교육 프로그램

Purpose and Intent 목적과 의도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많은 학생들은 컴퓨터에 익숙해져있고 그리고 컴퓨터를 소유하든지 접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컴퓨터를 가지는 기회 혹은 교육적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컴퓨터를 이용하는 추가적인 기회를 좋아하는 학부모님들과 학생이 많습니다. 랩탑 컴퓨터와 무선 인터넷 접속을 통한 과학기술은 대안적인 교육방법을 제공하는 독특하고 혁신적인 기회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효율적이 되려면 교실에서 각 학생은 학기 동안 동등하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육구는 학부모님들이 랩탑컴퓨터를 입수하도록 돕기 위해 국가적으로 승인된 컴퓨터 제조사와 협정을 성립했으며 그리고 전통적인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대안적 교육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교실 안에 무선 인터넷을 설정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2004-2005학년도에 시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것은 그러한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지역사회,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 지원에 성공적일 수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독특한 영역을 인정하면서, 이 정책에 내포된 수정을 조건으로 하는 교육구 정책 5116,5117 그리고 5118에 일치하여 교육구 선정 프로그램으로서 학습프로그램을 위해 랩탑컴퓨터로 알려진 컴퓨터에 근거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이 정책의 의도입니다. 선정 프로그램은 GATE (영재교육), I.B.(우등학습), 공동 강의 혹은 다른 전문화된 강의나 프로그램과 같이 랩탑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의도를 위해 한 그룹으로 구성될 때 학교전체적으로 혹은 학 학년 혹은 학급수준 안에서 학교적으로 제정될 수 있습니다. 한 학년 혹은 학급수준으로 실행될 때, 그 프로그램은, 이 정책의 규정조항을 따른다는 조건으로, 동일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진전 능력을 통해 그들을 성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학년 프로그램은 다음 해에 3학년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6학년에서 7학년으로 다른 중학교에 진학할 때, 그 프로그램은 이 정책에 따라, 2005-06년 학년말에 Ladera Vista 중학교나 Parks 중학교에 입학할 허락받은 6학년 랩탑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들이 8학년을 마칠 때까지 그 프로그램을 계속 연장받게 된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구가, 지원자가 컴퓨터 대여, 컴퓨터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요청할 의향이나 혹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컴퓨터를 사용할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고유재량으로 그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수적인 자원들을 지닌 여부, 그리고 그 학생들을 위해 제공되는 정원의 여유 여부, 그 빈자리가 지원자들로부터 무작위 선택에 의해서 채워질 수 있음을 판정하는 조건을 갖습니다. 한 학년 혹은 한 학급이 학년을 올라가고 프로그램 상태가 학생들과 함께 올라갈 때, 처음 그 학년 혹은 클래스는 이 정책의 규정조항에 따라 자신의 선택 상태를 성취해야 합니다.

확립된 랩탑 프로그램은 이 정책의 약정과 조건을 따른다는 조건으로 존립하여 지속될 것입니다.

“Continuation of the Program” 참조

Initiation of the Program 프로그램의 착수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프로그램의 승인을 신청하는 학교장의 의향 혹은 관심사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역시 제시하게 됩니다. 회의를 거쳐, 학교장은 그 제안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현재 등록된 모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서면 설문서를 보낼 것입니다. 설문은 3년 서약에 근거하여 교육구를 통해 랩탑 컴퓨터를 구입 혹은 대여할 자의적인 의사가 있는가를 포함해서: 만약 학부모가 대여/구입 약정서에 명시된 대로 랩탑을 반환하며 그리고 대여기간 종결 전 할부금을 중단하기로 선택한다면 그 대여가 종결될 것이며, 그리고 그 학부모가 대여가 종결된 날로부터 추가적인 할부금에 대한 더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ATTACHMENT #3
FULLERTON SCHOOL DISTRICT**

STUDENTS

Policy No.: 5118.1

Students Laptop Choice Education Program – Page 2

Board Adopted: December 12, 2006

학생 랩탑 선정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심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설문서는 역시 학부모들에게 보험으로, 90퍼센트 자금조달이 성취된다 할지라도 교육구 소유 컴퓨터를 대여할 가능성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대여/구입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재정적 지원 선택을 이용할 수 있음도 알려야 합니다. 학교장은 역시 학생들을 위해서 랩탑 컴퓨터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구의 일반적인 자금 외에 학교에 적용되는 주/연방 자금과 같은 자금 뿐 아니라, 재정지원/장학금을 위해 교육구가 승인한 기준에 따라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재정지원 혹은 장학금을 위한 보조금을 지역사회에서 조달할 수 있는가를 숙고해야 합니다. 재정보조/장학금 신청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 접수되어 보관되어질 것입니다. 만약 학부모/보호자에 대한 학교장의 설문서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학생 수의 적어도 90%가 대여/구입 약정을 통해 자신의 컴퓨터를 대여하거나 혹은 보조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여하는 상황이 된다면 - 예를 들면, 100명의 5학년 학생들을 위해, 90%의 학부모/보호자는 설문서 항목 1이나 2에 표기를 해야만 합니다.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사본과 함께 교육감에게 랩탑 프로그램 신청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안으로, 만약 교육구의 한정되지 않은 자금 외에 지역/주/연방 자금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할당될 학생 비율을 포함해서, 대여/구입 약정이나 보조금/지원을 통해 자신의 컴퓨터를 대여할 학생들의 비율이 적어도 90%일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사본과 함께 교육감에게 랩탑 프로그램 신청을 제시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고유재량으로 개별적인 학교 혹은 학년 근거에 의해 90% 요구 사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더 나아가서 교육구를 통해 컴퓨터를 대여하기로 선택한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컴퓨터 용이성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어떤 학교라도 교육구를 통해 컴퓨터를 대여하기로 선택하고 그 프로그램에 등록한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이 정책에 따라 컴퓨터 용이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 소유의 컴퓨터는 전 학기 동안 학교와 관련된 사용을 위해서라면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에게 이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수령되면, 이사회는 신청서를 승인하거나, 신청서의 수정 지시와 함께 학교장에게 발송하거나, 신청서를 취소하거나, 혹은 적절한 자금 혹은 기술자원을 교육구가 이용할 수 있기까지 실행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Access to the Program 프로그램 이용방법

정책 조항 5118에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설정된 학교의 정해진 지리적 등교지역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그 프로그램에 등록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주어질 것입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지 않는 어떤 학생이라도 그 프로그램이 교육구 내에 전통적인 프로그램으로 대신하는 학교에, 학년 혹은 클래스로 전학할 절대적 권리를 갖습니다.

**ATTACHMENT #3
FULLERTON SCHOOL DISTRICT**

STUDENTS

Policy No.: 5118.1

Students Laptop Choice Education Program – Page 3

Board Adopted: December 12, 2006

학생 랩탑 선정 교육 프로그램

정해진 등교지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이 수용된 후, 남겨진 정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자리라도, 교육구내의 전학생으로서 전학 재신청을 요구받지 않을 것을 예외로, 그들이 랩탑 프로그램에 계속 머무는 한, 교육구 정책 조항 5116과 5117에 따라 교육구내의 전학생들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전학 신청의 수가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초과할 경우, 학교장은 교육구 절차와 적용할 수 있는 법과 규정에 따라 공평하게 무작위 추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 가정이 컴퓨터를 구입했거나 대여했거나, 혹은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의사의 여부가 전학신청서를 검토하거나 승인할 때 고려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정해진 등교지역 안에 거주하는 학생이 등교지역 밖으로부터 전학오는 학생들에 의해서 대치되지 않을 것입니다. 학사연도 접속 및 사용을 포함해서, 그러나 제한되지 않는, 프로그램 컴퓨터에 관련된 모든 정책은 컴퓨터가 교육구로부터 구입 또는 대여되는지에 상관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 가운데, 컴퓨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학년 중 동일한 이용가능성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배포되고 수집되어질 것이며, 그리고 컴퓨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주어지는 기술적 지원에 비추어 기능적으로 상응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서술하는 모든 교육구의 자료는 만일 프로그램의 충분한 지원이 확립된다면 보험으로 교육구 소유의 컴퓨터를 대여할 선택사항을 포함하는 학부모의 선택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교육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랩탑 컴퓨터를 활용하는 학생들은 교과서 혹은 기타 학교 재산의 파손 혹은 분실에 대한 책임과 동일한 근거로 랩탑 컴퓨터 파손이나 분실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구 자체의 적립한 보험 프로그램은 산업기준과 일치하는 금액으로 비교의적 파손 혹은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비용이든지 보호될 것입니다. 현행 학부모 부담 비용은 한해에 55불입니다.

Continuation of the Program 프로그램의 연장

한번 랩탑 프로그램이 한 그룹의 학생들을 위해 확립되었다면, 학생들이 교육적 경험을 계속 진행해 나간다면 앞에 “목적과 의도”에서 진술된 것처럼, 프로그램이 그 그룹의 학생들을 위해 실제적으로 존속되어야만 합니다. 적어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85%가 대여/구입, 보조금/장학금의 결과로서, 혹은 교육구의 한정되지 않는 자금을 제외하고 지방/주/연방의 특별한 자금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진 컴퓨터를 소유하며, 교육구가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 프로그램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적절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교육적 가치가 교육과정을 통해 인정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교육구는 고유재량으로 85%의 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이 중단될 경우, 네트워크 접속은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까지 교육적 경험의 일환으로 대여/구입 컴퓨터 사용을 위해 존속될 것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해마다 평가될 것입니다. 평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기본 기술에 관련하여 테스트점수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며, 그리고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의 데이터입력에 근거할 것입니다. 평가보고서는 교육법에 의해 요구되는 범위까지 해마다 이행될 것입니다.

평가보고서와 4가지 질문의 각각에 대한 반응과 집계된 학부모의 수를 보여주는 설문서의 통계적 요약은 설문 혹은 평가서 작성 14일 안에 교육구 웹사이트에 공표될 것입니다.

**ATTACHMENT #3
FULLERTON SCHOOL DISTRICT**

STUDENTS

Policy No.: 5118.2

Transfers

Board Adopted: May 10, 2005

전학

Transfers into the District 학군 내의 전학

교육구 내의 학교로 입학할 학생들은 어디서든지 그들이 속했던 학년 수준과, 관찰기록 및 그들의 학문적,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 실행에 대한 평가로 교사, 담당자 및 학교장 혹은 대행자에 의해 배정 될 것입니다.

학생이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교직원들은 관찰과 평가를 작성하며 그리고 학교장이나 대행자는 학생의 적절한 학년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Transfers out of the District 타 학군 전학

학생이 타 교육구로 전학할 때, 만약 있다면, 기본적 능숙도가 평가되었고 교육구의 기준에 따라 만족스럽게 부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결한 보고서가 학생의 영구적 기록철에 첨부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캘리포니아 내부 또는 외부의 다른 학교로 보내지는 영구적 기록에 동봉될 것입니다.

학교로부터 전학 혹은 퇴교하는 학생은 학교의 모든 도서와 자료를 반환해야 하며 그리고 학생의 출석 마지막 날 또는 그 이전에 지불되지 않은 벌금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Legal Reference: Education Code
법률 참조 48011 Admission from Kindergarten or other school

ATTACHMENT #4

California Education Code § 48205 Effective: January 1, 2008

- (a) 조항 [Section 48200](#) 에 불구하고 학생의 결석이 다음과 같을 때 예외가 될 것입니다:
- (1) 질병
 - (2) 카운티 혹은 해당도시 건강 관리관의 지시로 격리조치
 - (3) 제출된 의료, 치과, 검안, 지압요법의 목적
 - (4) 학생의 직계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할 목적, 만약 장례식이 캘리포니아에서 거행될 경우, 결석이 하루이상이 아니라면 그리고 장례식이 캘리포니아 밖에서 거행될 경우, 3일 이상이 아니라면.
 - (5) 법에 의해 규정된 방식대로 배심원에 참여할 목적
 - (6) 학생이 보호하는 부모의 자녀의 학교 수업 동안에 있는 질병 혹은 의료 예약
 - (7) 교육 이사회에 의해 확립된 균등한 기준에 준하여 학생의 결석이 부모 혹은 보호자에 의해 서면으로 요청되고 그리고 학교장 혹은 지정 대리인에 의해 승인될 때, 비영리단체에 의해 제공된 입법상 혹은 사법상의 소환에 교육적 회의 참석, 직업회의의 참석, 종교적 피정의 참석, 당사자의 종교적 예식 혹은 축제일의 준수, 장례식의 참석, 법정출두를 포함하며 그러나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개인적 사유
 - (8) 선거 규약의 조항 [Section 12302 of the Elections Code](#) 에 준하여 선거지구 위원회의 회원으로서 업무를 담당할 목적
- (b) 이런 조항아래 학교에 결석하는 학생은 결석 기간 동안 하지 못한, 합리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모든 과제물과 시험을 완성하도록 허락 받게 되며, 주어진 적절한 기간 내에 만족할 성과를 보이면 그것에 준하여 충분한 점수가 주어질 것입니다. 학생이 결석한 어떤 과목이라도 그 해당교사는 시험과 과제물이 상응한, 그러나 학생이 결석 동안 하지 못한 시험과 과제물과 동일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 (c) 이 조항의 목적에 따라, 종교적 피정의 참석은 한 학기에 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d) 이 조항에 준하여 결석은 평균 매일 출석을 산정하여 결석으로 간주되며 그리고 주의 할당 지급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 (e)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직계가족”은 조항 [Section 45194](#) 에 서술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 안에 “고용인”에 대한 관계가 “학생”에 대한 관계로 간주될 것을 예외로 하고 있음

CREDIT(S)

(Added by Stats.1979, c. 236, p. 491, § 2. Amended by Stats.1986, c. 112, § 1; [Stats.1987, c. 1452, § 412](#); [Stats.1990, c. 315 \(S.B.2706\), § 1](#); [Stats.1994, c. 134 \(A.B.2466\), § 1](#); [Stats.1998, c. 846 \(S.B.1468\), § 17, eff. Sept. 25, 1998](#); [Stats.1999, c. 312 \(S.B.1208\), § 1](#); [Stats.2007, c. 204 \(S.B.278\), § 1.](#))

ATTACHMENT #5

FULLERTON SCHOOL DISTRICT

1401 W. Valencia Drive, Fullerton, CA 92833 (714) 447-7400

PUPIL ATTENDANCE CALENDAR – 2011/2012

교사/교직원연수 첫 출석일	2011년 8월 25일, 목요일
학생 첫 출석일 (*K-6, *7학년 오리엔테이션)	2011년 8월 29일, 월요일
학생 첫 출석일 (8학년 중학교)	2011년 8월 30일, 화요일
학생 마지막 출석일(*K-6, *7학년)	2012년 6월 14일, 목요일
학생 마지막 출석일 (8학년)	2012년 6월 15일, 금요일
교사 마지막 출석일	2012년 6월 18일, 월요일

DAYS STUDENTS DO NOT ATTEND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는 날

Labor Day Holiday 노동절	2011년 9월 5일, 월요일
Conference Day (K-6)/Staff Development Day (7-8)* 학부모교사상담/교사연수일	2011년 10월 10일, 월요일
Veterans' Day 재향군인의날	2011년 11월 11일, 금요일
Thanksgiving Recess 추수감사주간방학	2011년 11월 21-25일, 월-금요일
Winter Recess 겨울방학	2011년 12월 19-30일, 월-금요일
New Year's Day	2012년 1월 2일, 월요일
Martin Luther King's Holiday	2012년 1월 16일, 월요일
Semester Records Day 학기성적기록일 (7/8)/ 교사연수일 (K-6)*	2012년 1월 27일, 금요일
Lincoln's Holiday 링컨의 날	2012년 2월 13일, 월요일
Presidents' Holiday 대통령의 날	2012년 2월 20일, 월요일
Spring Recess 봄방학	2012년 4월 9-13일, 월-금요일
Memorial Day Holiday 현충일	2012년 5월 28일, 월요일

QUARTERS 4학기제 (7-8)

8월 29일 - 11월 4일	48일
11월 7일 - 1월 27일	41일
1월 30일 - 4월 6일	48일
4월 16일 - 6월 14일	43일

TRIMESTERS 3학기제 (K-6)*

8월 29일 - 12월 2일	62일
12월 5일 - 3월 16일	60일
3월 19일 - 6월 14일	58일

180 Student Days 학생출석일
186 Teacher Work Days 교사근무일

CONFERENCE DAYS 학부모상담일

학부모상담일	Preschool**, K-6*	2011년 10월 10일
가을 상담기간	Preschool**, K-6* (1-6학년 단축수업)	2011년 10월 10-14일
봄 상담기간	Preschool**, K-6* (1-6학년 단축수업)	2012년 3월 26-30일
성적기록일	중학교	2012년 1월 27일
상담일	중학교	가을, 봄
	Ladera Vista, Nicolas, Parks	가을: 미정
	Ladera Vista, Nicolas, Parks	봄: 2012년 3월 8일

* Fisler & Beechwood Schools will follow the K-6 dates and times unless parents are notified differently by Fisler & Beechwood Schools 학교가 부모님께 공지하지 않는한 휘슬러와 비치우드학교는 K-6학년 일정을 따릅니다.

** State Preschools 주립유아학교 @ Commonwealth, Maple, Richman, and Valencia Park
Fee based Childcare 학비부담탁아소 @ Acacia, Beechwood, Fern Drive, Fisler, Hermosa Drive, Rolling Hills, and Sunset Lane Schools

Board Approval: June 7, 2011
Revised Board Approval Date: August 23, 2011

ATTACHMENT #6
FULLERTON SCHOOL DISTRICT

STUDENTS

Policy No.: 5145.7

Sexual Harassment – Page 1

Board Adopted: June 10, 2005

성희롱

이사회는 성희롱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학교나, 학교가 후원하는, 또는 학교와 관련된 활동에서 다른 학생들, 고용인들 혹은 다른 사람들에 의한 학생들의 성희롱을 금지합니다. 이사회는 이 정책과 행정 규정에 준하여 항의하거나, 증언하거나, 조력하거나 혹은 항의절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보복적인 행위나 조치 역시 금지합니다.

Instruction/Information 교육/정보

교육감 혹은 대행자는 모든 교육구내 학생들이 성희롱에 대해 연령에 알맞은 교육과 정보를 얻는다는 것을 보증할 것입니다. 그러한 교육과 정보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1. 동일한 성별의 사람들 사이에 성희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어떤 행위와 행동이 성희롱을 구성하는가
2. 학생들이 성희롱을 참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메시지
3. 성희롱의 피해자가 항의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희롱 경우를 인지하고 있을 때는 신고하도록 권장
4. 성희롱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는 사람에 대한 정보

Complaint Process 항의절차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학생은 누구든지 즉각 담임교사 혹은 다른 직원을 접촉해야 합니다. 항의신고를 받은 학교 임직원은 항의신고를 받은지 24시간 안에 교육감 혹은 대행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학생이 관련된 성희롱 사건을 인지한 학교 임직원은 누구든지, 피해자가 항의신고를 하든지 안하든지, 그것을 교육감 혹은 대행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통상 항의신고가 이루어지는 교육감 혹은 기타 교육구 임직원을 포함하여 어떤 성추행의 경우라도, 학생의 보고를 받거나 혹은 그 사건을 인지한 임직원은 교육감 혹은 대행자의 직속 상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성희롱에 대한 항의를 보고받은 교육감 혹은 대행자는 즉시 행정 규정에 따라 그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는 주장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사람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교육감 혹은 대행자가 성희롱이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한 곳에서, 성희롱을 종결짓고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그 효력을 제시하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교육감 또는 대행자는 유효한 기타 방법들을 조언할 것입니다. 교육감 혹은 대행자는 보고를 보관하고 필요한 곳의 법 집행 당국에 회부합니다.

**ATTACHMENT #6
FULLERTON SCHOOL DISTRICT**

STUDENTS

Policy No.: 5145.7

Sexual Harassment – Page 2

Board Adopted: June 10, 2005

성희롱

Disciplinary Measures 징계조치

학교나, 학교가 후원하는, 또는 학교와 관련된 활동에서 누군가에 대한 성희롱에 개입한 학생은 누구든지 이 정책을 위반한 것이며 그리고 징계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4-8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 징계조치는, 그런 징계를 가하는 데 있어서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정학 그리고/혹은 제적을 포함합니다.

Record-Keeping 기록보관

교육감 혹은 대행자는 교육구가 학교 내에서 반복되는 괴롭힘의 행위를 감시하고 진술하고 그리고 예방할 수 있도록 성희롱의 모든 보고된 케이스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성희롱의 모든 항의와 주장은, 필히 조사를 실행하거나 혹은 차후의 필수적 조치를 취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비밀에 불허되어야 합니다.

Legal Reference:	Education Code
법률 참조	200-262.4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
	48900.2 Additional Grounds for Suspension or Expulsion; Sexual Harassment
	48904 Liability of Parent/Guardians for Willful Student Misconduct
	48980 Notice at Beginning of Term
	Civil Code
	51.9 Liability for Sexual Harassment; Business, Service and Professional Relationships
	1714.1 Liability of parents/guardians for willful misconduct of minor
	Code of Regulations, Title 5
	4900-4965 Nondiscrimin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Programs Receiving State Financial Assistance
	United States Code, Title 20
	1681-1688 Title IX, Discrimination
	United States Code, Title 42
	2000d-2000d-7 Title VI, Civil Rights Act of 1964
	2000e-2000e-17 Title VII, Civil Rights Act of 1964 as amended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34
	106.1-106.71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 in education programs
	<u>Reese v. Jefferson School District (2001) 208 F.3d 736</u>
	<u>Davis v. Monroe County Board of Education (1999) 526 U.S. 629</u>

**ATTACHMENT #6
FULLERTON SCHOOL DISTRICT**

STUDENTS

Policy No.: 5145.7

Sexual Harassment – Page 3

Board Adopted: June 10, 2005

성희롱

Legal Reference: (cont.)

법률 참조

Gebner v. Lago Vista Independent School District (1998) 118 S.Ct. 1989

Nabozny v. Podlesny (1996, 7th Cir.) 92 F. 3d 446

Doe v. Petaluma City School District (1995, 9th Cir.) 54 F.3d 1447

Oona R.-S. etc. v. Santa Rosa City Schools, et al. (1995) 890 F.Supp. 1452

Rosa H. v. San Elizario Ind. School District (W.D. Tex. 1995) 887 F.Supp. 140, 143

Clyde K. v. Puyallup School District #3 (1994) 35 F.3d 1396

Patricia H. v. Berkeley Unified School District (1993) 830 F.Supp. 1288

Franklin v. Gwinnet County Schools (1992) 112 S.Ct. 1028

Kelson v. City of Springfield, Oregon (1985, 9th Cir.) 767 F.2d 651

ATTACHMENT #7

NOTICE OF ALTERNATIVE SCHOOLS

대안학교 통지문

California Education Code Section 58501

캘리포니아 주의 법은 모든 교육구에 대안 학교를 제공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교육법 58500항은 대안 학교를 아래와 같이 지정된 방법으로 운영되는 학교 안에 개별적 클래스 그룹 혹은 학교로서 정의합니다:

- (a) 학생들이 자신감, 창의력, 친절함, 자발성, 풍부한 자력, 용기, 창조성, 책임감, 그리고 기쁨의 긍정적인 가치를 개발하도록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합니다.
- (b) 가장 훌륭한 배움은 학생이 배우려는 의지로 인해 배울 때 일어납니다.
- (c) 학생이 자가 동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그리고 학생이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관심사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배움의 환경을 유지합니다.
- (d) 교사, 부모, 그리고 학생이 함께 공동으로 배움의 과정과 주제를 개발하도록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합니다. 이 기회는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 (e) 학생, 교사, 그리고 부모가,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를 제한하지 않고 포함하여, 변화하는 세상에 끊임없이 반응하도록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합니다.

부모, 학생, 혹은 교사가 대안 학교에 대한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을 경우, 오렌지 카운티 학교 교육감, 플러튼 교육구 행정실은 학부모를 위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의 사본들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각 지역에 대안 학교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는 교육구의 이사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ATTACHMENT #8
FULLERTON SCHOOL DISTRICT**

COMMUNITY RELATIONS

Policy No.: 1312.3

Uniform Complaint Procedures – Page 1

통합 항의 절차

**Board Adopted: 11/4/08
Revised/Approved by Board: 8/19/09**

이사회는 교육구가 교육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주 및 연방 법률과 규정을 준수 보장해야 하는 기본 책임을 갖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교육구는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수준에서 조사 및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사회는 불만들을 가능한 학교 수준에서 초기에 약속적인 해결점을 찾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구는 그러한 법률에 위반되고 그리고/또는 차별을 주장하는 불만들을 조사하고 교육구의 **Uniform Complaint Procedures-통합 항의 절차**에 따라 그 불만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5 CCR 4620)

교육구는 주 자금 혜택을 받는 모든 교육구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있어서, 실제 또는 인식 성별, 성적 취향, 성별, 인종, 그룹 식별, 인종, 조상, 원국적, 종교, 피부색, 정신 또는 신체 장애, 혹은 나이를 포함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러한 실제 또는 인식의 특징을 가진 개인이나 그룹 조직에 기초하여, **Education Code 200과 220** 그리고 **Government Code 11135** 아래 모든 보호받는 그룹에 대하여 불법 차별을 단언하는 불만을 언급할 때 **Uniform Complaint Procedures-통합 항의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통합 항의 절차는 성인 교육 프로그램, 통합된 명백한 원조 프로그램, 이주자 교육, 직업 기술 및 기술 교육과 직업 기술 및 기술 훈련 프로그램, 보육 및 개발 프로그램, 아동 영양 프로그램, 그리고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주 및/또는 연방법 준수 실패를 주장하는 불만을 언급할 때도 역시 이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민원은 북 오렌지 카운티 특수 교육 지역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연방 법률 및 주 교육 코드에 명시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합니다. 통합 항의 절차는 추천 및 개별 교육 계획인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과정에 있는 동안에 학부모/보호자에게 제공하는 학부모 권리인 **Parents Rights**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와 교재의 충분성,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는 긴급한 시설 상태, 교사 공석과 비과제물 등에 관련된 불만들은 교육구의 통합 항의 절차에 따라 조사됩니다.

이사회는 불만 제기, 차별 사례 보고, 또는 항의 절차 참여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보복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참여는 어떤 방식으로든 불만의 상태, 성적, 또는 과제물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회는 개인 정보 보호에 모든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민원은 당사자의 기밀 및 절차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조사됩니다. 이것은 조사 또는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 적절하게, 상황 케이스 별로 교육감 또는 대행자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고소인의 정체성을 기밀로 유지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중립적인 중재자가 분쟁에서 자주 당사자 모두에게 동의될 수 있는 타협을 건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통합 항의 절차에 따라, 언제든지 불만의 모든 당사자들이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동의하려 할 때 교육감 또는 대행자는 그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교육감 또는 대행자는 결과가 주와 연방 법률 및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감 또는 대행자는 불만 제기와 조사 받도록 지정된 직원들이 그들이 책임지는 법률과 프로그램에 관한 지식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한 직원들은 교육감 또는 대행자에 의한 결정에 따라 법률 상담에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ATTACHMENT #8
FULLERTON SCHOOL DISTRICT**

COMMUNITY RELATIONS

Policy No.: 1312.3

Uniform Complaint Procedures – Page 2

통합 항의 절차

**Board Adopted: 11/4/08
Revised/Approved by Board: 8/19/09**

Compliance Officer(s) 준법 감시인

이사회는 불만 제기 접수 및 이후 관련 조치, 그리고 교육구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준법 감시인으로 인사 부서의 부교육감을 교육구 준법 감시인으로 지명하고 있습니다. Assistant Superintendent of Personnel Services, 1401 West Valencia Drive, Fullerton, California 92833, (714) 447-7450

Notifications 통지

교육감 또는 대행자는 교육구 통합 항의 절차의 연간 보급과 유효 항소에 대한 정보, 민법 구제안, 그리고 캘리포니아 교육부로 직접 가게 될 수도 있는 조건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Code of Regulations, Title 5, Section 4622** 규정 사항의 통지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통지는 반드시 (a) 영어 이어야 하고; (b) 학생의 기본 언어에서 학교에 있는 학생의 15% 이상이 그 언어를 말할 경우이어야 하며; 또는 (c) 통지받는 사람의 의사 소통의 형태이어야 합니다.

Legal Reference:

Education Code

200-262.3

8200-8498

49490-49560

52000-52049.1

52800-52863

54000-54041

56000-56885

64000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Child care and development programs

Child nutrition programs

School improvement programs

School-based coordinated programs

Economic impact aid programs

Special education programs

Consolidated application process

Code of Regulations, Title 5

3080

4600-4671

Application of sections 4600-4671

Uniform Complaint Procedures

ATTACHMENT #9

FULLERTON SCHOOL DISTRICT
Student Support Services
Health Services

1401 W. Valencia Drive • Fullerton, CA 92833 • Phone 714/447-7502 • Fax 714/447-7793

2011-2012 PARENT/GUARDIAN INFORMATION
FOR ADMINISTRATION OF MEDICATION AT SCHOOL

학교에서의 의약품 관리를 위한 학부모/보호자 정보

학부모 여러분께:

오늘날의 학교 환경은 많은 아동들의 의약품 사용 통제의 필요에 처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약을 통제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때로 학교시간 동안에 자녀에게 약을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녀들에게 약을 주기위해 교육구의 간호사들이 학교에서 비의료인들을 교육합니다. 이것은 도움을 받는 학생들의 숫자와 교육구의 세명의 풀타임 간호사와 한명의 파트타임 (총 3.5) 간호사들이 20개 학교를 봉사해야 하는 현실로 인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우리는 약을 학교수업 이외의 시간에 복용하는 약 복용시간 스케줄을 위해 여러분들이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도록 권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조항 49423에 순응하여, 교육구의 직원이 학생에게 약을 줄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된 의사의 지시사항과 그리고 학생의 부모 및 보호자의 서면 허락서에 의거하여 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허가는 처방이 바뀔 때마다 경신해야하며 그리고 매 학년도가 시작될 때 해야 합니다. 용기에 있는 처방 표지는 의사의 소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청구 판매 약은 의사 또는 치과의에 의한 처방에 한해서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의약품이 보건 사무실에 보관되도록 그리고 오직 의사 및 부모/보호자의 서명된 허가서가 파일에 있을 때만 통제될 수 있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학교에서나, 학교를 오가는 길에서나, 또는 통학버스에서 약을 스스로 소지하고 있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습관은 교정에 있는 모든 학생의 안전을 제공합니다. 이 규정에 오직 예외될 수 있는 것은 천식을 위한 흡입약 같이 만약 학생의 건강이 약이 없어서 위험할 경우에는 소지하게 됩니다. 적합한 해제 양식서를 학교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생의 건강 상황이 약이 없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약은 반드시 처방레벨이 붙어 있어야 하고 관리받게 될 해당 학생에게 처방되어진, 구입할 때의 그대로 용기에 담은 채 학교에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학교 직원은 플라스틱 백이나 플라스틱 용기, 또는 어떤 경우라도 재포장되어 학교로 보내져온 약은 줄 수가 없습니다. 날짜가 지난 약은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성인이 완비된 허가서와 함께 약을 학교에 가져 오셔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담당의사나 치과의를 방문하는 것과 약의 처방이나 복용량이 바뀌어 질 것을 예상하신다면, 적합한 양식서를 위해 학교사무실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에 감사드리며,

Laura S. Rydell, Director
Student Support Services

ATTACHMENT #10 TYPE 2 DIABETES INFORMATION

캘리포니아 교육법 조항 49452.7에 준하여, 지방 교육 기관들이 2010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입학하는 7학년 학생들의 학부모와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제 2형 당뇨병 정보입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는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미국 당뇨병협회), California School Nurses Organization (캘리포니아 간호교사 단체), 그리고 Children's Hospital of Orange County (오렌지 카운티 아동 병원)들과 협력하여 이 제 2형 당뇨병 정보를 개발하였습니다.

Description

제 2형 당뇨병은 성인에게 가장 흔한 당뇨병의 형태입니다.

- 몇 년전까지, 제 2형 당뇨병은 아동들에게서는 드물었지만, 더욱 흔해지고 있으며 특히 과체중인 십대들에게서 흔히 나타나고 있다.
- 미국 당뇨병 통제 예방 센터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출생한 3명의 미국 아동들 가운데 한명은 그들의 생애 중 제 2형 당뇨병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한다.

제 2형 당뇨병은 신체가 에너지를 위해 당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에 영향을 줍니다.

- 몸은 음식 속의 탄수화물을 몸의 세포를 위한 기본적인 연료인 당분으로 전환한다.
- 췌장은 당분을 혈액으로부터 세포로 옮기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만들어낸다.
- 제 2형 당뇨병에서는, 몸의 세포가 인슐린의 영향을 저항하며, 혈당수치는 올라간다.
- 시간이 가면서 당분은 혈액 속에서 위험스럽게 높은 수치에 이르는데, 그것은 고혈당이라고 불리운다. 고혈당은 심장병, 시력상실, 그리고 신장질환과 같은 건강문제를 야기한다.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Type 2 Diabetes 제 2 당뇨병과 관련된 위험 요인들

제 2형 당뇨병과 관련된 경고 사인들과 가능한 위험요소를 경험하거나 보이는 학생들은 그 질병을 위해 진단받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Risk Factors

위험 요인들

왜 어떤 사람들은 제 2형 당뇨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걸리지 않는지 완전히 알아내지 못하지만, 그러나 다음 위험 요인들이 아동들에게 제 2형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 **Being overweight.** (과체중) 아동들에게 제 2형 당뇨병을 유발시키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과체중이다. 미국에서는, 5명의 아동들 가운데 거의 한명이 과체중이다. 과체중 어린이가 당뇨병에 걸리게 확률은 두배 이상이 된다.
- **Family history of diabetes.** (당뇨의 가족력) 당뇨병에 걸린 많은 아동들과 청소년들은 적어도 당뇨병을 가진 한명의 부모를 가지고 있거나 당뇨병의 심각한 가족력을 가지고 있다.
- **Inactivity.** (무활동) 활동이 없는 생활습관은 인슐린에 반응하는 몸의 능력을 저하시킨다.
- **Specific racial/ethnic groups.** (구체적 종족/인종 그룹) 아메리칸 인디언, 흑인, 히스패닉/라티노, 혹은 아시아인/태평양섬 원주민들은 다른 인종그룹들보다 제 2형 당뇨병에 걸리는 성향이 있다.
- **Puberty.** (사춘기) 사춘기의 젊은이들은 어린 아동들보다 제 2형 당뇨병에 걸리는 성향이 있는데, 아마도 신체적 발달과 급격한 성장의 단계 동안 인슐린 저항을 야기시킬 수 있는 호르몬수치의 정상적 상승작용 때문일 것으로 간주된다.

ATTACHMENT #10 TYPE 2 DIABETES INFORMATION

Warning Signs and Symptoms Associated with Type 2 Diabetes

제 2 당뇨병과 관련된 경고사인과 증상

아동에게서 제 2형 당뇨병의 경고사인과 증상은 천천히 발전되며, 그리고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2형 당뇨병 혹은 인슐린 저항을 가진 사람이라고 모두 이러한 경고 사인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그리고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모두 제 2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식사 후에도 배고픔이 증가
- 이유를 알 수 없는 체중감소
- 목마름 증가, 입이 마름, 잦은 소변
- 몹시 피곤함을 느낌
- 시력이 흐려짐
- 상처가 잘 낫지 않음
- 특히 팔 아래 혹은 목뒤에 부드러운 피부 반점
- 불규칙한 생리, 생리없음, 그리고 혹은 여자 아이들에게서는 얼굴과 몸의 과도한 털의 성장
- 고혈압이나 비정상적 혈중 지방수치

Type 2 Diabetes Prevention Methods and Treatments

제 2 당뇨병 예방법과 치료

건강한 삶의 습관을 선택하는 것은 제 2형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의 가족력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양으로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은 그리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아동들이 정상체중과 정상 혈당수치에 도달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Eat healthy foods.**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 현명한 음식선택을 한다. 지방이나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먹는다.
- **Get more physical activity.** (신체적 활동을 더 가진다) 매일 적어도 60분까지 신체활동을 증가시킨다.
- **Take medication.** (약을 복용한다) 만약 식사와 운동이 그 병을 조절하는데 쉽지 않다면, 약으로 제 2형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2형 당뇨병을 치료하는 첫번째 단계는 의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의사는 자녀의 나이, 체중, 그리고 신장에 근거하여 과체중인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자녀가 당뇨병인지 혹은 당뇨병 전 단계인지 (제 2형 당뇨병으로 가는 증상)을 알아보기 위해 자녀의 혈당테스트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Types of Diabetes Screening Tests That Are Available

이용가능한 당뇨병타입 검사테스트

- **Glycated hemoglobin (A1C) test.** 두달 혹은 세달에 걸쳐 보통 혈당수치를 재는 혈액검사. 두개의 각 검사에서 6.5 퍼센트 혹은 그 이상의 A1C수치는 당뇨병을 암시한다.
- **Random (non-fasting) blood sugar test.** (무작위-굶지않는-혈당 검사) 혈액샘플이 아무 때에 취해집니다. 데시리터 (mg/dl) 당 200밀리그램의 수치나 그 이상은 당뇨병이라고 시사합니다. 이 검사는 공복시 혈당검사로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 **Fasting blood sugar test.** (공복시 혈당검사) 혈액샘플이 하룻밤 금식 후 취해집니다. 공복시 혈당수치가 100mg/dl보다 아래면 정상입니다. 100에서 125mg/dl는 당뇨병 전 단계로 판명됩니다. 두개의 각 검사에서 126mg/dl 혹은 그 이상이면 당뇨병이라고 시사합니다.
- **Oral glucose tolerance test.** (구강 포도당 내성검사) 설탕이 든 액체를 마신 후 다음 몇시간 동안 주기적 검사와 함께 하룻밤 금식 후 공복시 혈당수치를 재는 검사. 2시간 후 200mg/dl 이상으로 읽히지면 당뇨병이라고 시사합니다.

아동들에게 있어서 제 2형 당뇨병은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 한장의 정보 안에 규정된 안내지침은 당뇨병에 관한 인식을 불러일으키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만일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귀택 자녀의 학교 간호교사, 학교 행정관, 혹은 건강관리 담당 의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CDE Last Reviewed: April 27, 2010

**ATTACHMENT #11
FULLERTON SCHOOL DISTRICT**

COMMUNITY RELATIONS

Policy No.: 1250

Visitors/Outsiders – Page 1

Board Adopted: January 27, 1987

방문객/외부인사

Revised: September 5, 2006

이사회는 학부모/보호자 및 지역 사회의 관심있는 분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 프로그램들을 관람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습 프로그램의 방해로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감 또는 대행자는 정규 학교 시간 동안의 시설 방문 절차를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업일 중의 방문은 먼저 학교장 또는 대행자 그리고 교사와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상담을 원하는 경우, 비 수업시간에 교사와 약속을 정하여야 합니다.

수업일 중의 학급이나/교사에 대한 방문은 45분 이하 또는 한 수업 시간 이하로 제한되어야 하며, 2시간 혹은 세 수업 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서면 동의를 교사와 학교장/대행자 모두에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학교장/대행자와의 서면 동의없는 학교 방문은 2시간 이하 또는 3 수업시간 이하로 제한될 것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방해를 피하기 위해, 모든 방문자는 학교 수업 시간에 학교 건물이나 운동장에 들어오시게 되면 학교 사무실에 즉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방문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또는 학습 프로그램의 방해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장 또는 대행자에 의해 설립된 모든 합리적인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교 안전 및 보안 목적을 위해, 학교장 또는 대행자는 학교 구내에 있는 동안 방문객 신분의 표시 방법을 고안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와 학교장 모두의 서면 허가없이 교실에서 학생 또는 방문자는 모든 전자식 청취 또는 녹음 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교장/대행자는 학습 프로그램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학생, 교사, 혹은 다른 직원들에게 심각한 방해를 줄 수 있는 상황과; 학생 또는 학교 직원에게 희롱이 될 때; 학생이나 교직원의 건강 또는 안전에 절박한 위협을 초래할 때; 혹은 학교장/대행자의 의견에 좋은 유익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방문을 거절 내지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을 위해 “visitor-방문자” 용어는 정상적인 과제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교육구 직원이 아닌 자로서 학교/교실 방문이 포함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school is in session-학교가 활동 중에” 라는 용어는 정규 수업 일의 30분 전과 30분 후, 그리고 쉬는 시간, 잠깐의 휴식시간, 그리고 점심시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instructional day-학습일”의 뜻은 학생들이 수업, 교육, 훈육, 또는 다른 전문적인 목적을 위해 30분 전 혹은 후를 교사 또는 다른 교직원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Legal Reference:

Education Code

32210	Willful disturbance of public school or meeting
32211	Threatened disruption of interference with classes; misdemeanor
32212	Classroom interruptions
35160	Authority of governing boards

**ATTACHMENT #11
FULLERTON SCHOOL DISTRICT**

COMMUNITY RELATIONS

Policy No.: 1250

Visitors/Outsiders – Page 2

Board Adopted: January 27, 1987

방문객/외부인사

Revised: September 5, 2006

Legal Reference: (cont.)

35292 Visits to schools (board members)
51512 Prohibited use of electronic listening or recording devices

Evidence Code
1070 Refusal to disclose news source

Labor Code
230.8 Discharge or discrimination for taking time off

Penal Code
626 – 626.10 Schools
627 – 627.10.1 Access to school premises, especially
627.1.1 Definitions
627.7 Necessity of registration by outsiders

Attorney General Opinions
95 OPS.CAL.ATTY.GEN.509 (1996)
(6/90 9/92) 10/96

ATTACHMENT #12

FULLERTON SCHOOL DISTRICT

TRANSPORTATION DEPARTMENT

PARENT PAY TRANSPORTATION RATES FOR 2011 – 2012

2011-2012 학년도 학부모 부담 교통 운임비

연중 왕복통학 - \$315

연중 편도 통학 - \$225

학기 왕복 통학 - \$180

학기 편도 통학 - \$112.50

연중 왕복 통학 할인 운임 - \$157.50

(이사회 설정 도보거리 구역 밖에서 반드시 거주하며 재정적으로 자격이 돼야 함)

만약 재정적으로 자격이 되면 이사회 설정 도보거리 구역 밖에 거주하는 통학생들에게는 무료 운임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분실 패스 복원 비용 - \$10

이사회 설정 도보거리 지침

유치부 (K) - 6학년	1.25 마일
7 - 8학년	2.0 마일

이사회 설정 도보거리 내의 통학

이사회 설정 도보거리 내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다음의 조건에서는 통학버스를 이용할수 도 있습니다:

1. 아동이 이미 정해져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올 수 있을 경우,
2. 버스에 자리가 있는 경우,
3. 부모 부담의 전체 운임비가 지불되었을 경우

재정적인 필요에 근거하여 이사회 설정 도보거리 내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무료 혹은 할인요금에 적격하지 않습니다.

ATTACHMENT #13
Fullerton School District
Nutrition Services Department

풀러튼 교육구 영양서비스 부서

교육구 내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전산화된 급식 구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구에 처음 등록할 때 각자의 학생 신분번호를 지급받으며, 8학년 졸업을 할 때까지 동일한 신분 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번호는 급식 구매 프로그램을 위해 교육구 전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음식과 음료는 영양 서비스에 의해 충족되고 있거나 혹은 공립학교 교육구들이 수행해야 하는 주 및 연방 법률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및 교육구의 복지 정책에 대한 정보는 영양 서비스 웹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아침급식 값은 \$1.80입니다. 모든 초등학교의 점심값은 \$2.55이며, 중학교 점심은 \$2.80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비치우드 학교와 휘슬러 학교의 유치부(K)-5학년까지의 점심은 \$2.55이며, 6-8학년 학생들은 \$2.80에 점심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급식 값 지불에는 여러방법이 있습니다. 수표와 현금 지불이 학교에서 가능합니다. www.mySchoolBucks.com 를 통한 온라인 지불을 권장합니다. mySchoolBucks 이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첨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봉투를 이용한 현금지불은 가능합니다. 현금지불은 그 날에 바로 학생구좌에 입금되어 사용가능 합니다. 은행에서 되돌려져 온 수표는 \$25불의 추가금이 부과될 것이며, 두번째 수표가 되돌려져 올 경우에는 개인수표가 아닌 오직 송금수표 또는 현금으로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지불은 전화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교육구에서는 전국 학교 점심 및 아침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침급식은 모든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심있는 학부모님/보호자들은 영양서비스부서 **Nutrition Services Office**로 완성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무료급식 또는 아침 30센트, 점심 40센트의 할인된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신청서가 검토되고 허가가 되어야 행해집니다. 신청서는 접수에 따라 진행되며, 혜택은 즉시 시작될 것입니다. 신청서는 교육구 사무실과 영양부서에서 얻을 수 있으며, 학년 중 어느 때나 접수될 수 있습니다. 매년 새 신청서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지속적인 해당 모든 학생들에게 매년 여름 동안 가정으로 우송됩니다. 새로운 학생들에 국한하여 학교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급식값이나 점심 가져오는 것을 잊은 학생들에게는 대체 전식과 메뉴에 제공된 모든 기타 항목들이 포함된 대체 식사가 제공됩니다. 구매하지 않는 급식은 허락되지 않으며, 이 방침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환불 요청은 영양 서비스 웹페이지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으며 작성하여 영양 서비스 부서 **Nutrition Services Office** 로 우송하시면 됩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사이트에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5.00 불 이하의 금액은 교직원 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환불 수표는 우편으로 발급됩니다. 학생의 계정에 남아있는 잔액은 다음 학년도로 이체됩니다.

월별 메뉴는 영양서비스 웹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며 초등학교의 학교 사무실과 카페테리아에 게시됩니다.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메뉴는 영양 서비스 웹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지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항목은 학교부지에 따라 다릅니다. 점심과 아침급식은 (참여 학교에서) 단축수업일을 포함하여 학교수업이 있는 매일 제공됩니다. 학생과 성인을 위한 학급파티, 개학의밤 행사, 학생표창 기념과 같은 많은 종류의 행사를 위한 캐터링도 가능합니다. 메뉴는 교육구 웹사이트 www.fsd.k12.ca.us에 들어가 영양부서 **Nutrition Services Department** 난의 양식서 (Forms Library) 아래에 들어가면 게재되어 있습니다. 선주문은 전화 714-447-7437, 이메일 **Amanda Colon** 에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문에 대해서는 확인이 따르게 됩니다.

FULLERTON SCHOOL DISTRICT
Additional Convenience!
www.mySchoolBucks.com

이번 온라인 학교급식 구좌 납부 서비스는 급식구좌를 갖고있는 풀러튼 교육구의 모든 학생들에게 이용 가능하며 또한 그것이 제공하는 편리성과 안전성을 위해 교육구 영양부서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 비자, 매스터 카드로 주 7일 24시간 안전하게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납부된 24시간 후에 학생 급식 구좌에 예금됩니다.
- 현금이나 수표의 분실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학부모님이 인터넷으로 학생구좌를 감독 할 수 있습니다.
- 크레딧 카드회사로 특정일을 정하여 자동납부 할 수 있습니다.
- 구좌의 잔금이 적을 때 자동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 자녀가 각각 다른 학교를 출석할지라도 자녀 모두를 위해 한 절차로 할 수 있습니다.

학년말에 남은 잔액은 새 학년도로 자동 이체됩니다. 만약 서면요청 (Nutrition Services 웹페이지에서 양식서 제공)이 있을 경우에는 잔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잔액은 고등학교의 학생 구좌로 이체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www.mySchoolBucks.com , 또는 www.fsd.k12.ca.us 교육구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General Info” 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런 후 “My School Bucks” 를 클릭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온라인 급식 납부를 시도해 보십시오!

이 서비스 이용 수수료에 관하여 mySchoolBucks 통지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IMPORTANT INFORMATION REGARDING MYSCHOOLBUCKS.COM FEES

수수료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MYSCHOOLBUCKS를 사용하기 위한 3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Membership Fee Method 회원제 요금방법: 회원이 되어서 회원 가입된 기간에 따라 단일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간 별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2 개월 - \$14.80

6 개월 - \$9.90

9 개월 - \$12.90

3 개월 - \$4.95

일단 회원이 되면, 액수에 상관없이 몇번의 납부금을 내시든지, 회원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추가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Fixed Transaction Fee Method 고정거래 요금방법: 어떤 금액이든, 몇명의 자녀이든 그들을 위한 고정된 단일 금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고정 \$1.35 입니다.

계좌 설정은 무료이며, 자녀의 급식 매입과 잔액 상황을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자녀의 급식계좌 잔액이 내려가면 그것을 알려주는 자동화된 이메일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항상 자녀의 학교에 직접 지불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mySchoolBucks는 독립적인 회사이며, 교육구를 위한 온라인 지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이메일이나 내용에 관한 문의는 여러분의 교육구로 하지 마시고, 직접 mySchoolBucks, 전화번호 866-519-148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WWW.MYSCHOOLBUCKS.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이러한 지불 선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양 서비스 웹페이지에 게시된데로 수수료 등은 30일 경고 통지와 함께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is parent publication was created by the Superintendent's Office, Fullerton School District.
For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call Kathy Ikola at 714-447-7465.